목차

지도 03
질문, 그리고 탐색 04
일정 05
사람들 06

이야기 1 — 영국 07
이야기 2 — 독일 13
이야기 3 — 이탈리아 사르데냐 29
이야기 4 — 일본 오키나와 35

부록 — 기고 36
SOFA 비교 보고서 44

지도

2015년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미군 기지
미군 기지(30개 이상)
소규모 미군 기지
미 해군 함대
미국
캐나다(3)
푸에르토리코(미국)
(37)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10)
쿠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존스턴환초(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국(27)
아일랜드
벨기에(10)
네덜란드(7)
이탈리아(50)
포르투갈(21)
스페인(4)
모로코
노르웨이(2)
폴란드
덴마크(2)
독일(174)
헝가리
루마니아(5)
불가리아(4)
그리스(8)
코소보
터키(17)
이스라엘(9)
이집트
이라크(6)
쿠웨이트(10)
바레인(10)
아랍에미리트(3)
카타르(7)
오만(7)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9)
파키스탄
조지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남수단
부룬디
모잠비크
세이셸
디에고가르시아섬(영국)
어센션섬(영국)
니제르
차드
가나
모리타니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남극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필리핀(7)
홍콩
한국(83)
일본(113)
북마리아나제도(미국)(5)
괌(미국)(47)
웨이크섬(미국)
마셜제도(11)
오스트레일리아(4)
지난 9월7일 추가 배치된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군 소성리 기지에 반입된 뒤 설치되고 있다. 경향신문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있는 세계 최대의 기지 매점 출입구.
1971년 1월 영국 정부의 직원들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서 차고스인들을 모두 추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섬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무기 시험에서 나온 포탄 잔해.
갈마바람 제공

©갈마바람, 경향신문

질문, 그리고 탐색

이토록 많은 미군기지가 필요한가?
냉전 이후에도 미군기지가 늘어난 이유는?
환경 오염
독성 물질
인권 침해
성매매 강간 살인 범죄
구조화된 차별
주둔군지위협정 SOFA
같은 점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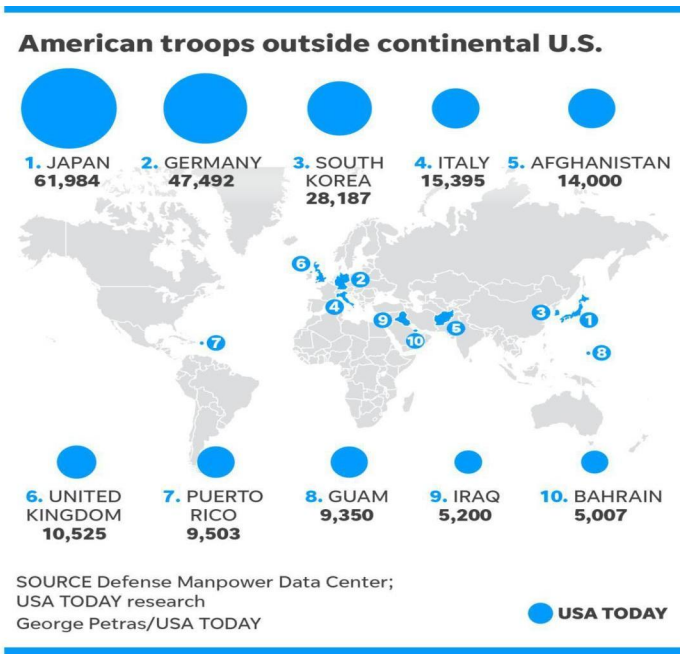

2018.07.07 ~ 07.16

0707
영국
요크셔 핵군축캠페인(CND)활동가 미팅
멘위스힐 기지 탐사
브래드퍼드 평화박물관 20주년 행사

0708
독일로 이동

0709
독일 베를린
군사기지에서 시민공원으로,
템펠 호프 공원 탐사
100% Tempelhofer Feld 활동가 미팅

0710
독일 데사우
연방환경청 토양지하수 담당 공무원
인터뷰
에너지자립 건물, 연방환경청 둘러보기

0711
독일 안스바흐
안스바흐 미군기지 탐사
Etz Lagnt's 활동가 미팅
지역 언론 인터뷰

0712
독일 카이저슬로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탐사
기지 소음·오염에 반대하는 시민모임
지역 녹색당 인터뷰

0713
프랑크푸르트-밀라노-데모나 이동
이탈리아 데모나
보건전문가 인터뷰

0714
이탈리아 사르데냐
사르데냐 기지대응 활동가 그룹 미팅
사르데냐 둘러보기

0715
이탈리아 사르데냐
사르데냐 주의회 의원·의사 인터뷰
칼리아리 시청 앞 집회 참석

0716
이탈리아 사르데냐
정당·단체·전문가 공동회의 참관
키라사격장 인근 마을 전 시장 인터뷰

사람들

#Etz langt'z #이제됐어 #100%템펠호프 #온전한 #CND #사르데냐

영국

군축 평화운동 · Menwith Hill 기지

군축 평화운동의 기록

요크셔 핵군축캠페인CND 활동가, 캐서린을 만나다
멘위스 힐Menwith Hill 기지를 탐사하다
브래드퍼드 평화박물관 20주년 기념전시회에 가다

©greenham-common.org.uk

"영국에서는 1980년대 평화 운동의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린 햄커먼Greenham Common 평화캠프가 그중 하나다. 새로운 핵무기가 배치될 미 공군기지인 그린 햄커먼의 공사장 옆에 눌러앉아 농성을 벌이던 여성들은 캠프를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 기지가 완전히 폐쇄된 2000년까지 수만 명의 여성들이 중심이 된 적극적 반핵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의 11개 미군기지에 평화캠프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유럽 핵무기 군축END에 대한 호소이다. 이 호소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미사일 뿐 아니라 소련, 폴란드, 포르투갈까지 핵무기 없는 유럽을 만들자는 제안이 담겼다. 유럽 핵무기 군축운동은 소련이나 동유럽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멘위스 힐Menwith Hill 기지

“미국의 인공위성 군단은 전 세계의 극초단파를 감지하여 분석한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미 국방부와 군무정보요원에 의해 처리된다”

요크셔 CND 활동가, 캐서린의 안내로 멘위스힐 기지를 둘러보다

“Menwith Hill의 활동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영국인들에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언급된 적이 없으며, 국제 보안을 위협하는 광의의 미국 국력 예측 전략을 위한 것이므로 기지는 폐쇄되어야 한다. 모든 해외 기지 폐쇄를 동반하는 국제적 군축프로그램 하에서, 군비 감축으로 인해 절약된 상당한 양의 비용은 서양의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춰줄 수 있는 현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등 민간 투자에 사용될 수 있다”

1960년대에 설립된 멘위스 힐은 영국 북 요크셔 지역 헤로게이트Harrogate에 가까이 위치한 특급 비밀 전자 스파이 기지이다. 명목상은 영국 공군기지(RAF)지만, 실제 미국가안보국(NSA)에 의해 운영되며, 신호 정보(SIGINT)를 담당하는 범세계적 네트워크의 핵심 기관이다. 미국의 인공위성 군단은 전세계의 극초단파를 감지하여 멘위스 힐을 포함 지역별 지상송신기에서 분석한다.

전자 통신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 방대한 양의 정보가 미국방부와 군무정보요원에 의해 처리된다. 이 요원들은 암호 해독, 언어학, 컴퓨터, 인공위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고, 수십억짜리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 분석된 데이터는 미국 메릴렌드 주의 포르 미드Fort Meade에 위치한 국가안보국(NSA) 본사에 전달되어 미국의 장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석유 및 기타 고갈성 자원의 공급 예측을 포함한 전 세계 군사력 추정치에 기반한다.

멘위스 힐은 다른 국가들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오는 상업적, 기업용 전파를 가로채기도 한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골프공 모양의 레이돔(알루미늄 프레임 위에 두꺼운 플라스틱을 씌워 고도각과 가리키는 방향을 감춤)의 증가, 수행 요원의 증가, 운영 빌딩과 기타 시설의 증대에 기반한 것이다. 영국과 유럽을 포함한 외국 경쟁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미국 기업들은 국제 입찰에서 성공적으로 호가할 수 있었다.

현재 그곳에는 33개의 레이돔이 존재한다.

비폭력 직접행동의 힘

2000년부터 이어진 매주 화요일 멘위스 힐 기지 앞 항의집회
영국에도 #담벼락_투어

린디스 퍼시 Lindis Percy, 77세
25년간 500번의 체포, 15번의 구속 경력을 갖고 있는 영국의 평화활동가.
그는 항상 자신의 분신인 거꾸로 된 성조기를 들고 다닌다. 알래스카 에스키모 이누이트들의 미국에 대한 저항에 연대의 의미를 담아 '거꾸로 성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조기를 불에 태우는 것보다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성조기를 거꾸로 드는 저항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판결도 받았다. 이번 방문에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했으나 "미군기지가 아니라 녹지를!"이라고 적힌 '거꾸로 성조기'를 선물 받았다.

앤지 젤터 Angie Zelter, 67세
"평화운동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비폭력 직접행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우리는 몰래 펜스를 자르고 기지에 들어가 군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활주로와 차량에 페인트로 슬로건을 칠하고, 미사일 발사대에서 춤을 추고, 3만 명이 모여 손을 잡고 기지를 둘러싸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 매년 수백 명이 체포를 당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트라이던트 플라우쉐어즈(Trident Ploughshares: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해체해 쟁기(농기구)를 만들자는 의미/ 평화운동단체 이름이기도 함) 운동은 군사 장비를 무력화하고 집회를 통해 군사시설을 봉쇄하는 등 보다 급진적인 직접행동이다.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헤엄치며 트라이덴트 잠수함으로 침투해 전기선을 끊고 컴퓨터와 문서들을 호수로 쏟아버렸다. 이 일로 구속되어 5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 한 달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영국의 핵무기 자체가 국제법 위반임을 들어 우리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변론했고, 결국 무죄 방면돼 정치·법률적 파장을 일으켰다"

*트라이던트 미사일: 미국 록히드 사가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얄읏한 공 the strAngeball 2006

얄읏한 공 작업은 노순택 작가가 평택 팽성읍 대추리의 너른 들녘에
우뚝 솟은 흰 공 모양의 대형 구조물이
대체 무엇인가를 추적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노순택

#artist statement_출처 geonhi.com
"노순택 작가는 원고지 100매 분량의 작업노트를 통해 주민 인터뷰, 주한미군사령부에 보낸 질의서, 검색 엔진을 통한 국내외 자료수집, 군사전문가의 자문내용, 구조물의 재질과 용도를 서술해 나간다. 그리고 이 흰 공의 주위에서 삶을 영위해 온 늙은 농부들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환기시킨다.

레이돔(Radar + Dome = Radome)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성능 레이더는 한반도의 안보와 정보를 손에 쥐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미국'이란 존재의 다른 이름이다. 레이돔은 정보 기계인 동시에 감시 기계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기계이다. 평택 대추리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 확장사업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전쟁 때 들이닥친 미군에 의해 두 번이나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도 질긴 삶을 이어왔던 이 마을 농민 공동체는 2006년의 폭력 앞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는 늙은 농부들의 절규에 우리 사회는 아무런 답도 해주지 못했다.
100여 점의 이미지로 구성된 '얄읏한 공' 시리즈에서 레이돔은 주위 풍경과 묘하게 어울리며 스스로의 존재를 은폐 또는 부각시킨다. 얄밉고도 야릇한 공의 변신술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인 듯하나, 사실은 저 괴물의 자유의지인지 모른다"

환경과 평화의 영역이 교차하는 여러 분쟁 현장은
비슷한 부정의不正義의 모습이 숱하게 반복된다.
그곳에서 알 권리를 주장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야기하고,
사라지는 멸종위기 종들을 기록한다.
어찌할 수 없다는 침묵 앞에서,
담벼락 바깥에서 시끄럽게 굴고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소송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다.
서로의 팔목을 잡고, 평화는 총칼로 지킬 수 없고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뇐다.
여러 현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격려 속에 우리 안에 구획된 국경과 세대와 성별의 경계가 무너진다.
활동을 알리고 가치를 확산하려는 노력, 그 노력의 잦은 실패와 드문 승리. 작지만 큰 행동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함께여서 가능한 게 아닐까

#그래도_되는_땅은_없다 #경계와_연대 #평화와_생태의_교차점에서

이야기 2

독일

시민공원 · SOFA

군사기지에서 시민공원으로

공공의 공간으로 변신한 군사기지 #온전한_반환

템펠호프 공원 내 시민 가든 모습

"2008년 10월 미군의 반환이 완료되고 템펠호프 공항은 문을 닫았다.
공항이 굳게 폐쇄돼 있는 상태에서 베를린 시는 총 305㏊(305만㎡)에 달하는 부지의 41%가량인 125㏊에 47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체육시설을 짓는 계획을 마련했다. 100% 템펠호프라는 단체명은 템펠호프 공항 부지 100%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로 베를린시가 부지 일부를 주거단지,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0년 5월 베를린 시는 폐쇄돼 있던 공항을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면서 개발계획도 본격화했는데 공항 내부를 직접 둘러본 시민들 사이에선 개발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011년 1월 빈집점거운동 활동가들이 공원 내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교사나 일반 직장인, 대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이 100% 템펠호프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항 부지 내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동시에 법적으로 베를린시의 개발계획을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베를린 템펠호프Tempelhof 공원

단체 '100% 템펠호프' 활동가 마라이케

"2008년까지 주독미군의 기지로, 민간항공기 활주로로 사용하던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 반환 이후 일부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논란이 일었고,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부지 공원화가 결정되었다"

"매년 1~2회 시민총회를 열어 7~10명을 선출하고, 이들이 매월 1회 베를린 시와 회의를 하여 템펠 호프 공원에 대한 협의를 한다. 최근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말지, 주말에 7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데 입구를 어느 정도로 넓힐지 등등. 건축, 주민협의, 도시 조경 및 환경 담당부서 공무원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 시민 가든은 공청회 과정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6년 전부터 협의를 통해 시작되었다. 민관 갈등이 있었지만, 부지 관리에 대한 200페이지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했다. 공원은 개발과 완공 개념이 아니다. 과정 중에 있다"

#참고사례_짓지도 부수지도 않고 자연과 시간에 맡겼다_김정수 ©한겨레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북쪽으로 8km떨어진 보나메스 Bonames 인근은 1992년 주독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모리스 로즈 에어필드(MauriceRoseAirfield)로 불리던 미군 헬리콥터 기지였다. 미군 기지가 반환되자 프랑크푸르트 시정부와 시민들은 서두르지 않고 이 땅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뒀다가 10여 년이 지난 2003년 기지 개조작업을 시작했다. 환경단체 분트가 제안한 '인간의 레저활동과 자연보존의 평화로운 공존'이 개조작업의 목표였다. 기지 안에 새로운 시설을 짓지도 않았고, 멀쩡한 시설을 부수지도 않았다. 미군이 남기고 간 건물은 새로운 용도를 찾아냈다. 그렇다고 자연보존을 위해 특별히 한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헬리콥터 대기장이었던 곳은 바닥에서 콘크리트 포장 일부를 깨어내는 작업을 했지만, 깨어낸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기지 밖으로 내보내 폐기물로 처리하기 않고 기지 안에 남겨 놓았다. 작은 것들은 철사그물에 넣어 활주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사람들이 걸터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크고 편평한 슬래브 형태로 깨진 것들은 모아서 바닥에 깔아놓았다.

프랑크푸르트 분트의 활동가 칼 셰러는 "깨뜨린 콘크리트 포장 덩어리들을 치우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측면도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자는 뜻도 있다"며 "아무렇게나 쌓인 콘크리트 판들 안의 틈새는 야생동물들의 훌륭한 서식처가 된다"고 설명했다. 북서쪽 자연보존 구역을 나오면서 본 안내판에는 "우리는 이 지역이 정글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일일 뿐"이라고 적혀 있었다.

온전한 반환을 희망한다

반전평화단체 스나가와 평화광장 대표 후쿠시마 쿄코 님, 자원활동가 장대석 님에게 타치가와 미군기지 반환과 이후 쇼와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2017.11.20)

""도쿄 외곽의 다치카와 시는 1972년까지 주일미군 공군기지가 있었어요. 2차 대전 패망 전에는 일본이 사용했었는데, 1955년 일본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계획과 함께 지역 농민들 땅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죠. 이곳 스나가와 농민들은 토지 수용에 강하게 반발했고, 힘을 모아 정부의 측량작업을 막았어요.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일본 정부는 기지 확장계획을 포기했고, 이후 베트남전쟁 당시 다시 추진하지만 역시 주민들의 저항에 무산됐고 결국 미군은 다치카와시를 떠나게 됐어요"

"힘을 모아 싸운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자위대가 들어왔거든요. 1981년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 부지 전체 중 3분의 1 정도인 148㏊를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현대사의 아픔, 주민들의 저항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곳이에요. 공원 주변에는 일본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들이 들어섰고, 공원 명칭이 쇼와 일왕을 기념하도록 만든 것도 문제지요"

"한국 용산 미군기지도 반환 이후 공원화 계획이 있다고요. 쇼와기념 공원은 좋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용산은 서울 시민들의 뜻을 모아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용산미군기지_온전한_반환을_희망한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일본군,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서울 정중앙의 땅 80만 평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를 임시 개방하여,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랜 기간 담벼락과 철조망에 둘러싸여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 지하철과 도로의 모습도 변형시켰고 국내 지도에서도 초록색으로만 표시된 금단의 땅이다. 1980년대 후반,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용산 기지 터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2007년에는 제1호 국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남산과 용산, 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넓은 녹지 공간은 상상만 해도 미세먼지로 답답한 숨통을 탁 트이게 한다. 그런데 용산이라는 가능성의 공간을 상상하기 전에 찜찜한 게 있다. 바로 오염 문제이다. 미군이 오랜 기간 사용한 용산 기지 터는 각종 환경사고의 종합판이다.
한 세기만에 돌아오는 땅을 환대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며 공공의 공간으로 재편하기에는 여전히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겁다. 오염되고 병든 땅이 대체 어떤 상태인지 누가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늘 빠져있다. 오염자가 정화를 책임지고, 처음 사용할 때 부지 그대로 돌려받는 것, 그것이 온전한 반환이다. 온전한 반환 이후에야 공공성과 생태, 역사를 담은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독일 연방 환경청 공무원 인터뷰

토양지하수 담당.
요르크 프라우엔스타인
Jörg Frauenstein

한국의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영향,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정책, 사례를 듣고 싶어서 왔다

이곳 데사우의 연방환경청에는 800 여명이 근무한다. 그 외 전국 현장모니터링과 샘플링하는 사람들이 400명 등 총 1,300명이 있다. 이 중 50% 이상은 여성이며 75%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녹색연합에서 군사기지 토양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 일본 등에서 동일한 주제로 많이 만났다. 녹색연합에서도 10년~15년 전쯤 찾아와서 인터뷰한 기억이 있다.

언제부터 환경청 토양업무를 하였나

1992년부터 일했다. 원래 광산 토양오염 및 정화를 담당하고 있고 군사기지에 대해서도 맡았었다. 동쪽에는 러시아기지가, 서쪽에 나토기지가 주로 주둔했는데 두 곳은 각각 환경기준이 달랐다. 동독의 군사기지는 토지 소유권이 소련에게 있어서, 통일 이후 통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토지 가치와 정화 비용을 두고 협상을 했다. 독일 연방환경청이 구 러시아 군사기지를 전수 조사하기도 했다. 2003년부터 연방환경청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연방정부에 업무와 책임이 넘어갔다.

독일 연방정부의 토양지하수 정책은

1999년 토양보호법 제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유해물질, 폐기물 분야가 개선될 예정이다.

토양보호법의 목적은 토양 기능을 보호,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부지로 사용되었는지 용도를 확인하고, 각종 규정 적용과 해법에 대해 판단한다. 보통 주요 오염원은 폐기물과 산업부지 두 그룹으로 나뉜다. 군사기지를 별개의 그룹으로 만들지 논쟁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으며 폐기물/산업부지 두 그룹 안에 해당 항목을 넣기로 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정화 책임은 주정부에 있으며 주정부에서 군사기지 관련 특별 이니셔티브를 만들려고 하거나 만들었다)

보통 오염 추정지역에 대해 조사하면 그 중 실제10% 가량이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다. 토양정화방식 중 오염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도 있다. 예산과 기술문제로 완전한 정화가 어려울 경우, 확산 제한방식/보호방식을 적용한다. 독일도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제한방식은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토양 오염을 조사할 때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제도를 활용하는지, 이 제도가 적용된다면 어떤 기관이 평가하고 위해도 기준은 어떤지 알려달라. 참고로 현재 한국은 오염 물질 각각의 오염농도를 조사하고 예외적 경우에 위해성 평가 제도를 활용한다

위해성평가가 일반적이다. 1단계는 주정부가 의심지역에 대해 타당성 여부와 문헌 조사 실시를 한다. 비용이 적게 든다. 2단계가 메인인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이 판단되면 급박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오염이 되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 오염이 위해하지 않은 경우 아카이브로 자료를 넘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독일의 토양관리 원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독일은 위해성평가시 오염물질 조사 항목은 약 130개이며, 기준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미래 어떤 부지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한 경우 조사물질 항목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통일 이후, 독일은 군사기지 및 무기제조 처리 등으로 인한 토양지하수의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들었다.

각각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책임이고, 전체 비용은 일괄 확인이 어렵다.

군사기지로 인한 오염 규모는 산업 부지나 폐기물 처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에 대한 정화작업, 최종 결정은 주정부 당국에 있고, 토지 소유주에 따라 연방/주정부로 책임이 나눠진다.

과거 동서독 군사기지에 대한 해법은 토지 소유, 절차, 기존 적용된 법률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각각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다. 서독은 나토군이 독일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었다. 독일 통일 이후 군사기지 전반의 복구/정화 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적용된 절차에 따라 항목이 섞여 있어 추산하기 어렵다.

독일은 세계에서 미군기지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사용하던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때 환경오염 관련 독일-미국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사, 협상절차가 있는가?

(사전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듣다)

독일보충협정(NATO SOFA SUPPLEMENTARY AGREEMENT)상 제53조 독일 국내법 준수 조항이 있으며, 독일법상 규제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4항부터 8항까지는 환경오염제거와 비용부담,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독일보충협정에 근거 미군 당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 정화한 사례가 있나

여러 곳이 있다. 바바리아주의 미군기지인 리톤 배럭스Leghton Barracks는 미군이 정화한 후 가든, 주거단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인란드 팔츠Rhineland-Paltz내 기지에서도 역시 미군이 정화하고 떠났다. 어떤 맥락에서 던지는 질문인지 짐작이 된다.

개인적 견해지만 독일과 한국의 제도, 사회적 상황이 다른데, 그 조건을 소거한 채 환경 정화비용 사례만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물론 주한미군과의 관계가 불평등하다면 그 제도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 양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토·독일주둔군지위협정SOFA

같은점_외국군 주둔, 환경오염으로 인한 갈등, 군대의 특권
다른점_ 통일, 다자안보체제, 국내법 존중이 아니라 준수

나토NATO의 설립 배경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는 서방 연합국과 구소련의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다. 서방 연합국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상하게 된다. 그리고 1949년 12개 나라가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 조약에 서명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인 나토NATO가 탄생한다.

다자안보체제

현재 나토 회원국은 28개로 북아메리카 2개 나라(미국, 캐나다)와 유럽26개 나라이다. 1990년대부터 나토와 대립관계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의 모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도 나토 회원국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나토조약 5조에 만약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무장 공격이 발생하면, 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공격받은 회원국을 도와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토군지위에 대한 보충협약의 재개정과 환경조항

1951년 '나토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됐을 때, 환경보호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1959년에 체결된 '나토군지위에 대한 보충협약'의 45조1항에서는 필요시 주둔지 바깥, 환경보호구역에서도 군사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
통일독일 이후, 1993년 '나토군지위에 대한 보충협약'을 개정할 때, 주독 외국군이 독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위협정에 대한 해석과 환경문제로 인한 논란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 나토군 지위에 대한 보충협약(나토-독일 SOFA)

제53조
1항) 외국군부대와 민간인 종사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도록 허용된 기지에서 국방의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일법과 기타 다른 국제협약에서 다른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군부대 조직과 기능, 지휘부, 민간인 종사자와 그 가족 및 – 제3자의 권리, 기지 주변 지역 및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군내부의 문제 등이 관련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지 사용은 독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Article 53
1. Within accommodation made available for its exclusive use, a force or civilian component may take all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its defense responsibilities. German law shall apply to the use of such accommodation except as provided in the present Agreement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as regards the organization, internal functioning and management of the force and its civilian component, the members thereof and their dependents, and other internal matters which have no foreseeable effect on the rights of third parties or on adjoining communities or the general public. The competent German authorities and the authorities of a force shall consult and cooperate to reconcile any differences that may arise.

제54A조
1항) 파견국은 독일 내에서의 군대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2항) 본 협정에 따라 독일법을 준수하고 적용하는 데 부합하여 외국군 당국과 민간인 종사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계획의 환경친화도를 조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 인간과 동식물, 토지, 물, 공기, 기후와 지형 및 문화와 기타 재물에 – 이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조사·분석·평가해야 한다. 조사의 목적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문제점을 상쇄시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군 당국과 민간인 종사자들은 독일의 민간 당국과 군당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54A
1. The sending States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all the activities of their forces within the Federal Republic.
2.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ect for and application of German law pursuant to the present Agreement, the authorities of a force and of a civilian component shall examine as early as possible the environmental compatibility of all projects. In this context they shall identify, analyze and evaluate potential effects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projects on persons, animals, plants, soil, water, air, climate and landscape, including interactions among them, as well as on cultural and other property. The objective of the examination shall be to avoid environmental burdens and, where detrimental effects are unavoidable, to offset them by taking appropriate restorative or balancing measures. In this connection, the authorities of a force and of a civilian component may call upon the assistance of German civil and military authorities.

- 나토군지위에 대한 보충협약 서명의정서

제63조 8항 b) 파견국 부대와 민간인 종사자는 동 조항에 의거 그들이 사용한 위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의 확인, 평가,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 현행 법적 기준치를 위반했을 경우 - 부담하기로 한다. 동 비용은 보충협약 53조 혹은 - 전제조건이 성립하는 한 - 제 41조 및 52조를 적용하여 독일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 파견국 부대와 민간인 종사자는 자국정부의 예산 및 절차가 허용되는 대로 신속하게 동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Re Article 63 8.(b) A force or a civilian component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bear cost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ssessment, evaluation and remedying of hazardous substance contamination caused by it and that exceeds then-applicable legal standards. These costs shall be determined pursuant to German law 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53 or, where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1 or 52. The authorities of the force or of the civilian component shall pay these costs as expeditiously as feasible consistent with the availability of funds and the fisc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sending State.

성과와 한계

'나토군지위에 대한 보충협약(나토-독일 SOFA)'을 개정함으로써 외국군이 사용하는 기지에 대한 독일법 적용이 보다 강화되었고, 독일군이 기지 사용 과정에서 자국의 환경법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외국군도 준수하도록 촉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자연보호, 토양, 화학물질 등 관련 독일연방법에 군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적용의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해석과 관점에 차이가 있으며 주독미군기지 사용과 관련 여러 기관소송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 진동, 오염, 추락 위험 등 피해에 항의하고 기지 이전/철수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주독 미군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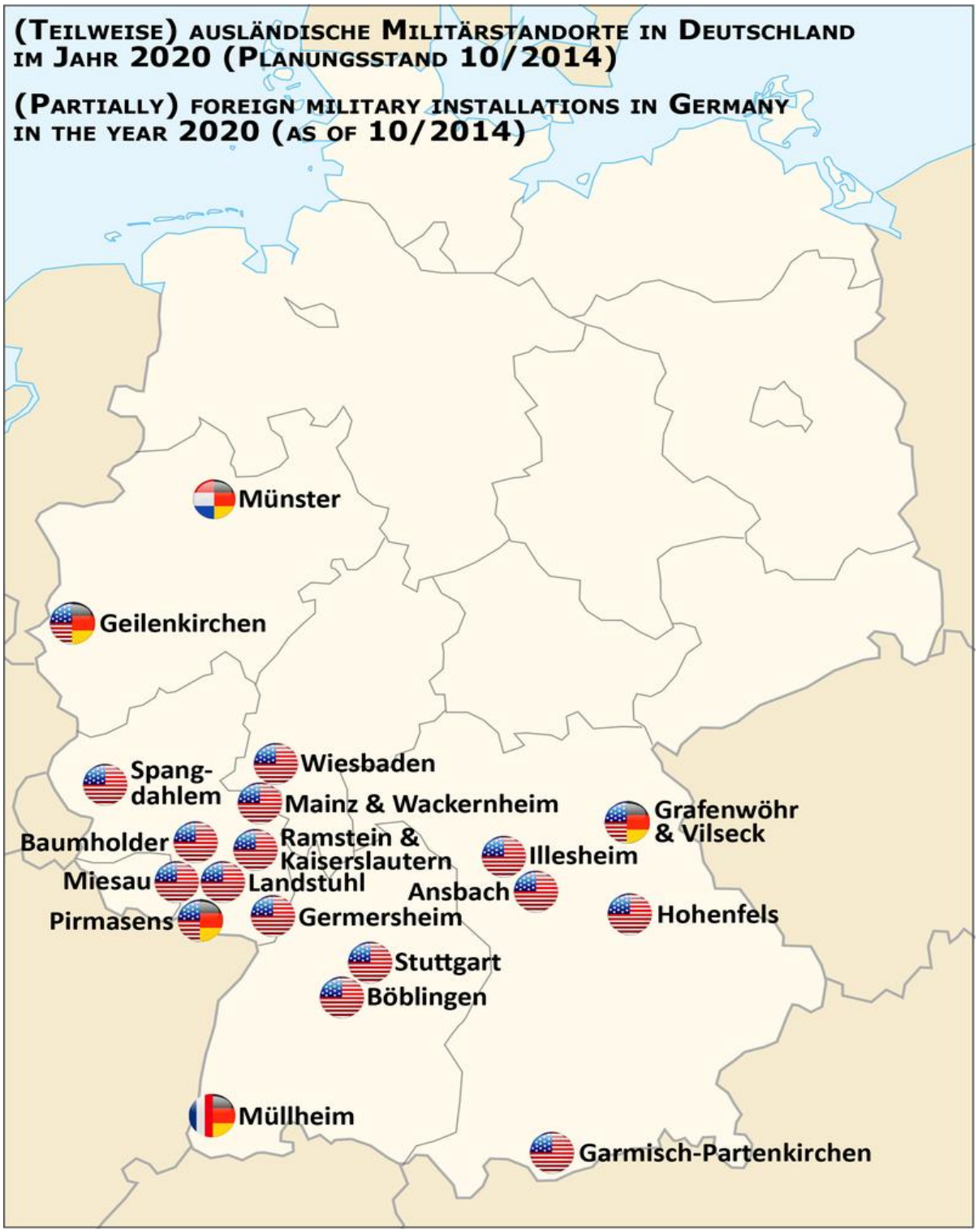

2020년까지 주독 미군기지 현황(2014년 기준) us stützpunkte in deutschland ©Wikipedia

독일 안스바흐Ansbach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단체 Etz langt'z(이제 됐어!)를 만나다
밀밭이 펼쳐진 고즈넉한 작은 마을, 밤낮으로 전투기 선회 훈련

소규모 기지가 안스바흐, 일레스하임 등에 흩어져 있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

136대 헬기·전투기가 안스바흐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고, 야간비행과 훈련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 새벽 3시 넘어서도 훈련을 할 때가 있다.

Etz langt'z 활동가 보리스, 안드레

단체 Etz langt'z(이제 됐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단체는 2016년에 만들었다. 136대 헬리콥터가 안스바흐 기지에 배치되어 있고, 야간비행과 훈련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 새벽 3시까지도 훈련을 할 때가 있다. 소음 피해와 이착륙으로 인한 미세먼지 측정 등 감시활동을 하고, 직접 행동과 캠페인도 한다. 미군기지 헬리콥터 1대가 만드는 대기오염이 자동차 운행 OOO대가 배출하는 오염량과 같다 등등의 폭로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몇 명인가. 미군 주둔에 대해 어떤 여론인지도 궁금하다
안스바흐는 약 4만 명 가량이 거주 중이다. 나토군처럼 다자 방어체제에 대해 독일 내 전반적인 여론은 우호적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작년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에 항의하는 집회와 캠페인을 시작해 3,500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고 최종 9,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미군 당국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이 거부했다.

안스바흐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는가 (안드레는 변호사)
소음 규정이 있으나 군 공항에 대한 소음기준이 낮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다는 판단했다. 2009년 시의회 결의안 발표 당시 법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연방정부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차별하는 면도 있다. 특별법 요구에 대해서도 응답이 없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2

이 마을에 사는 게 정말이지 너무 괴롭다. 처음엔 탱크만 있었는데 기지가 확장되고 헬기·전투기가 늘면서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독일은 주둔군에 독일법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다. 미군이 이 작은 마을 주거 공간 바로 위에서 새벽 3시에도 훈련을 한다는 게 놀랍다.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큰 도시는 다를 수 있다. 미군의 훈련 상황, 이를테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게 제각각이고 각 주마다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다. 미군이 철수되길 바라고 있다.

흩어져 있는 기지 곳곳을 안내받고 활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환대해 주어서 고맙다. 사실 독일 내 미군기지 주민들의 피해가 이 정도인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마을에 사는 게 정말이지 너무 괴롭다. 처음엔 탱크만 있었는데 기지가 확장되고 헬기·전투기가 늘면서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이사를 생각 중이다. 멀리 한국에서 온 당신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을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해해 달라.

한국에 와 본 적이 있나. 한국과 일본에도 독일처럼 미군기지가 많이 주둔해 있다. 곳곳에서 소음, 환경오염, 인권 피해, 그리고 기지 확장 등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방문한 적은 없지만, 소식은 알고 있다. 한국의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과 정권 변화가 무척 인상적이다. 특히 올해 남북 관계의 변화, 정상 회담까지 하는 모습이 놀랍다. 군사기지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가끔 찾아보긴 하는데, 한국 소식도 전해 달라. 서로의 활동소식을 공유하면 좋겠다.

이들에게 US Army Go Home! 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한 묶음 받다

독일 람슈타인 Ramstein Air Base

람슈타인 공군기지 감시활동을 하는 엠리치 부부를 만나다
해외 미 공군기지 중 최대 규모
#보호구역에_연료덤핑 #드론_전쟁 #식수오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전경 ©flickr

독일 남부에 위치한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부지는 1400ha로 미국의 해외 공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람슈타인의 기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주로 소음, 인근 숲에 연료 덤핑(배출), 탄저균 반입, 지하수 오염 등이 있다.

3년 전, 미군의 드론(무인기)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한 예멘 시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람슈타인 기지가 미국의 드론(무인기) 전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군 드론 전쟁의 배후로 독일을 지목하게 된 것은 한 전직 미군 무인기 조종사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이 조종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드론을 조종해 1623명을 살해했다"고 양심 고백을 하였으며 "내가 참가한 드론 공격은 모두 독일 람슈타인에 소재한 미 공군기지를 거쳐 이뤄졌다. 독일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모든 드론 전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보호구역에 둘러싸인 기지

“이젠 당신이 행동해야 할 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공군기지 감시활동을 하는 도리스•호르스트 부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계기는 무엇인가

람슈타인 미공군기지가 있는 이 곳 카이저슬로 지역에는 10만 명이 거주한다. 나는 공군기지로 인한 피해에 불만이 있었지만 침묵하는 시민이었는데, 우연히 어떤 신문 칼럼의 필자를 직접 만난 게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불만을 털어놓는 나에게 “이젠 당신이 행동해야 할 때” 라고 말했고,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하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영향을 받고, 그 이후 여러 활동과 사건에 대해서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이다. 공군기지로 인한 여러 환경피해를 감시하고 알리는 활동을 한다. 이곳은 소음 소송 끝에 밤10시부터 새벽까지 미군 비행 금지를 쟁취했다. 미군으로 인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미군 주둔에 찬성하지만, 그 외 주민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환경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달라. 누가 해결하나

람슈타인 인근에 무기보급창이, 과거엔 핵무기도 있었고, 반환중인 무기보급창, 동북쪽 지역에 지하수에서 과불화합물, 등유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래도 다른 지역과 달리 람슈타인 기지는 지방 정부 내에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구가 있어서 미군과 협력하거나 정보를 잘 공유하고 있다. 란드슈탈 윗지역의 식수원 오염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람슈타인 기지가 자연보호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주변 통로가 차단되어 동물들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란드슈탈 지역 병원에 미군의 탄저균 반입 문제가 있었지만 미군이 사과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미군이 비상시라며 항공유 JP-8을 마구 덤핑하는데, 한 번에 5t씩 버려진다. 그곳은 전체가 보호구역이다.

NUCLEAR POWER? NO TA!
Yorkshire CND activists t
actions in Yorkshire and
entire country.
What we sta
GLOBAL NUCLEAR BAN
Aufrüstung stoppen!
STOP
US ARMY
GO HOME
US ARMY
GO HOME

이탈리아

입증 책임 · 환경권

이탈리아 미군기지

건강역학조사_안토니에따Antonietta Gatti 박사를 만나다
사르데냐 섬의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을 만나다
#키라사격장 #주민건강피해 #동물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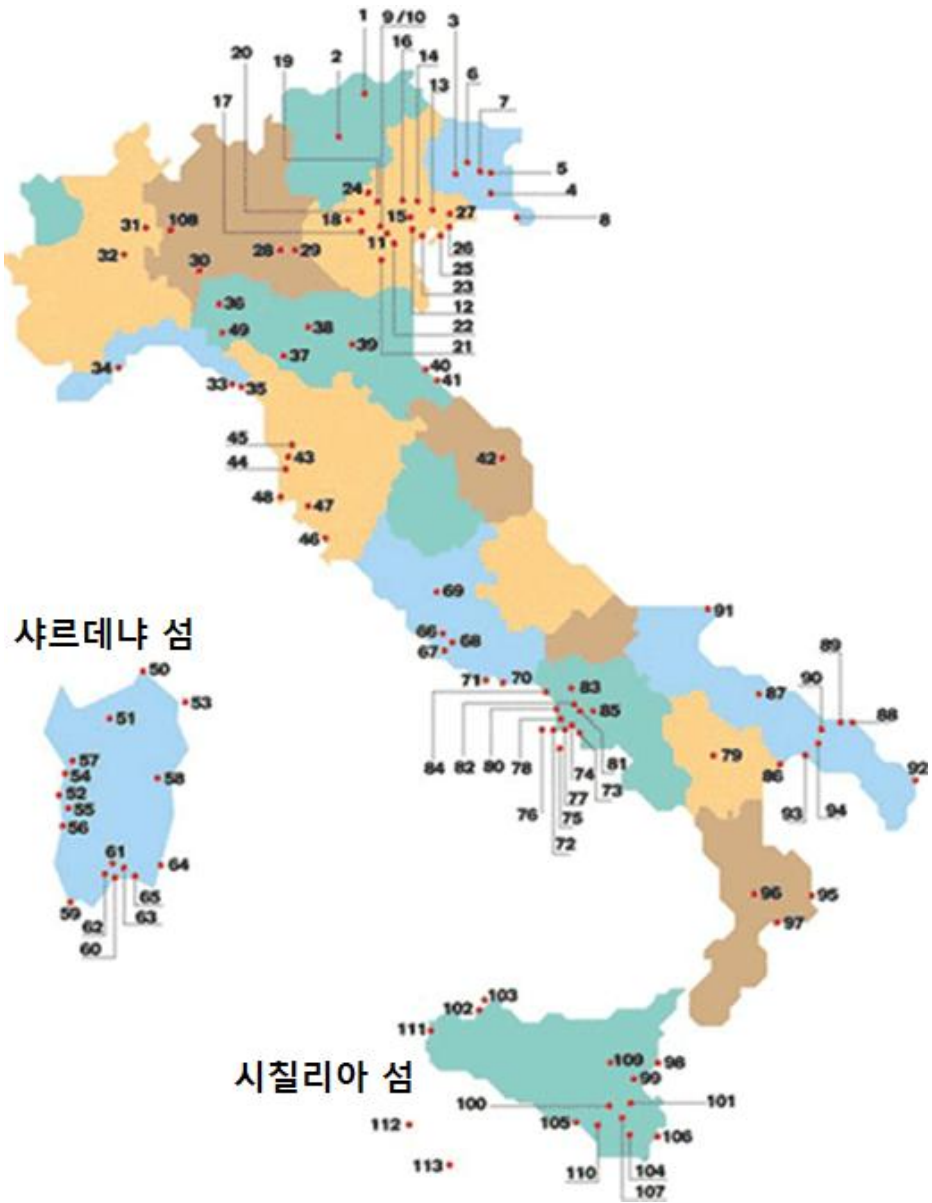

이탈리아 미군기지 위치

사르데냐Sardinia

키라 신드롬 Quirra syndrome
암 발병, 기형, 신종무기 실험, 폐기
정보 비공개, 입증 책임

유명한 휴양지, 사르데냐 섬 동부에 '키라 사격장'이 있다

"이탈리아 군사기지 시설의 62%가 샤르데냐 섬에 집중되어 있다.
1950년대에는 이탈리아 군만 사용했지만 2차 대전 시기 타국에 점령당했다. 이탈리아 헌법상 전쟁 준비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재도 군사훈련 중이고 다른 나라 군대에 개방하여 여러 종류의 군사 훈련 및 실험이 허용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지 내에서 어떤 활동과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다. 카다피 시절 리비아 군대가 와서 훈련과 실험을 한 적도 있다. 키라 사격장 주변 환경·건강 피해를 조사할 당시 대체 사격장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나토 군 비밀을 지켜야해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탈리아 국내법에는 그런 비밀 규정은 없다"

문제는 미세입자nano-particle

군대와 전쟁으로 인한 오염과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무기가 사용된 전쟁으로 인한 질병, 발칸 전쟁에서 민간인, 군인들에게 새롭게 발생한 질병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안토니에따 가띠 박사

안토니에따 가띠 Antonietta Gatti
대학에서 근무했고, 대만, 일본 등에서도 연구한 경험이 있다. 은퇴 후 이곳 데모나에 연구소를 열고 주로 소각장, 군대와 전쟁으로 인한 오염과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무기가 사용된 전쟁으로 인한 질병, 발칸 전쟁에서 민간인, 군인들에게 새롭게 발생한 질병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고온 폭발로 인한 질병, 제약회사 백신에 의한 미세입자로 인한 오염, 조종사 항공기 근무자들로 인한 현상들도 확인 중이다

사르데냐 섬의 '키라 신드롬'이 무엇인가

키라 신드롬은 사르데냐 섬의 키라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 및 동물에 높은 빈도로 암 발병, 기형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것은 비에케스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고, 나토 군도 알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키라의 육상해양 사격장과 그 인근에서는 신종 무기를 실험하고 연습하며, 폐무기를 처리하고 있다.
키라에서 시설 벽을 긁어 분석하니 알루미늄 성분이 무척 높게 검출된 바 있다. 키라 사격장 피해자들의 체내 성분을 분석했을 때, 기존에 볼 수 없는 납, 티타늄, 철, 크롬이 합쳐진 혼합화합물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혼합화합물은 고온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이탈리아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미세입자를 통한 피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본다.
사르데냐 특정지역에서는 토륨(무기 센서 탑재시 사용되는 성분), 우라늄 등이 단독으로 발견되고 있다. 열화우라늄탄의 경우 만지면 우라늄만, 터질 경우 다른 것들과 화학작용을 하여 여러 성분이 생성돼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구글 지도상 사르데냐 무기처리장을 확인하면 고온 폭발로 주변의 풀이 자리지 않아 하얗게 보인다. 이탈리아 국방부가 사르데냐 양치기 목동들과 계약을 하는데, 여름에는 사격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초지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이후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의 초지 잎사귀를 조사해보니 ZR(미군 탱크 보호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문제는 미세입자nano-particle

“미세입자는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이다. 전쟁에서 각종 폭발로 3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미세입자가 발생하고, 이 입자들과 신체의 상호작용으로 암이 발병한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나. 전쟁 지역의 현장 조사는 어떻게 가능한가

2002년에 정부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 평화유지군으로 발칸으로 나갔던 이탈리아 병사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발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발병에 대해 의사는 진단만 하고 원인을 찾지 못했고, 기자들이 발칸에서 미군이 방사능무기(열화우라늄탄 등)를 사용한 것 같다는 추정 보도를 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 투하 이후 발생한 질병들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런 듯 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칸, 이라크, 레바논에 파병 갔던 군인들에 대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위원회가 4차례 구성되었다.
극우당 집권 이후에는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나는 위원회가 중단되기 전까지 자문 역할을 맡았었다.

조사의 결론이 궁금하다.

조사 결과 방사능 노출보다는 미세입자로 인한 영향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만일 방사능으로 인한 발병이었다면, 피해자 인체조직에서 우라늄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실제 피해자 조직검사 결과 1명한테만 우라늄이 발견되었다. 즉, 폭탄이 터진 것 자체만이 아니라, 폭발과 동시에 주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질병을 만든다.

미세입자nano particle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인가

미세입자는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이다. 전쟁에서 각종 폭발로 3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미세입자가 발생하고, 이 입자들과 신체의 상호작용으로 암이 발병한다. 현재 나는 유럽연합EU과 미세입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세입자nano particle의 경로는 호흡기인가

피부, 호흡, 혈관, 음식 섭취 모든 경로이다. 미세입자는 매우 작아서(10^{-7}~10^{-9}) 체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세포 DNA와 장기에 영향을 준다. 혈액을 통해 1시간 안에 전신에 퍼질 수 있다.

비밀은 위험하다

군사기지로 인한 직접 오염은 화학, 무기실험으로 인한 것이고, 간접 오염은 무기실험을 한 뒤 토양 오염 물질이 비산, 확산되는 것이다. 대체 그곳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리엘라, 비비아나 등 사르데냐 섬의 군사기지 문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사르데냐에는 이탈리아의 육해공군 모두가 사용하는 군사기지가 있으며, PISQ (Polygono Intafosora sotte de quirra), 테울라다, 카르포 포르스카 세 곳이 주요 지점이다. 1950년대부터 무기실험 훈련을 계속 했고,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기지이지만 국제협약을 통해 NATO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지로 인한 직접 오염은 화학, 무기실험으로 인한 것이고, 간접오염은 무기실험을 한 뒤 토양오염 물질이 비산, 확산되는 것이다. 암 발병 등 건강 피해에 대해 정부는 부인하지만 군사활동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내가 사는 지역 주민은 5천 명으로 다른 마을도 800~1000명 정도이다. 인구는 적은 편이다."

"1990년대 들어 이탈리아 환경법이 바뀌면서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환경오염이나 건강 피해, 위험에 대한 예고가 없었고, 대체 그곳(군사기지)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건강 피해는 지금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기형 동물이 태어나거나 죽는 경우도 흔하다. 1950, 60년대 키라 마을에는 440명 정도가 거주했지만, 현재는 모두 떠나고 60명 정도의 양치기들이 살고 있다"

헤노코에서 살고 싶어. 바다를 매립하지 말아요!

오키나와는 세계 최북단의 듀공서식지.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남획과 환경악화로 개체 수가 줄어 현재 확인되는 개체는3두 뿐,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기듀공 C짱은 엄마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먹이 활동장소를 찾아 헤노코에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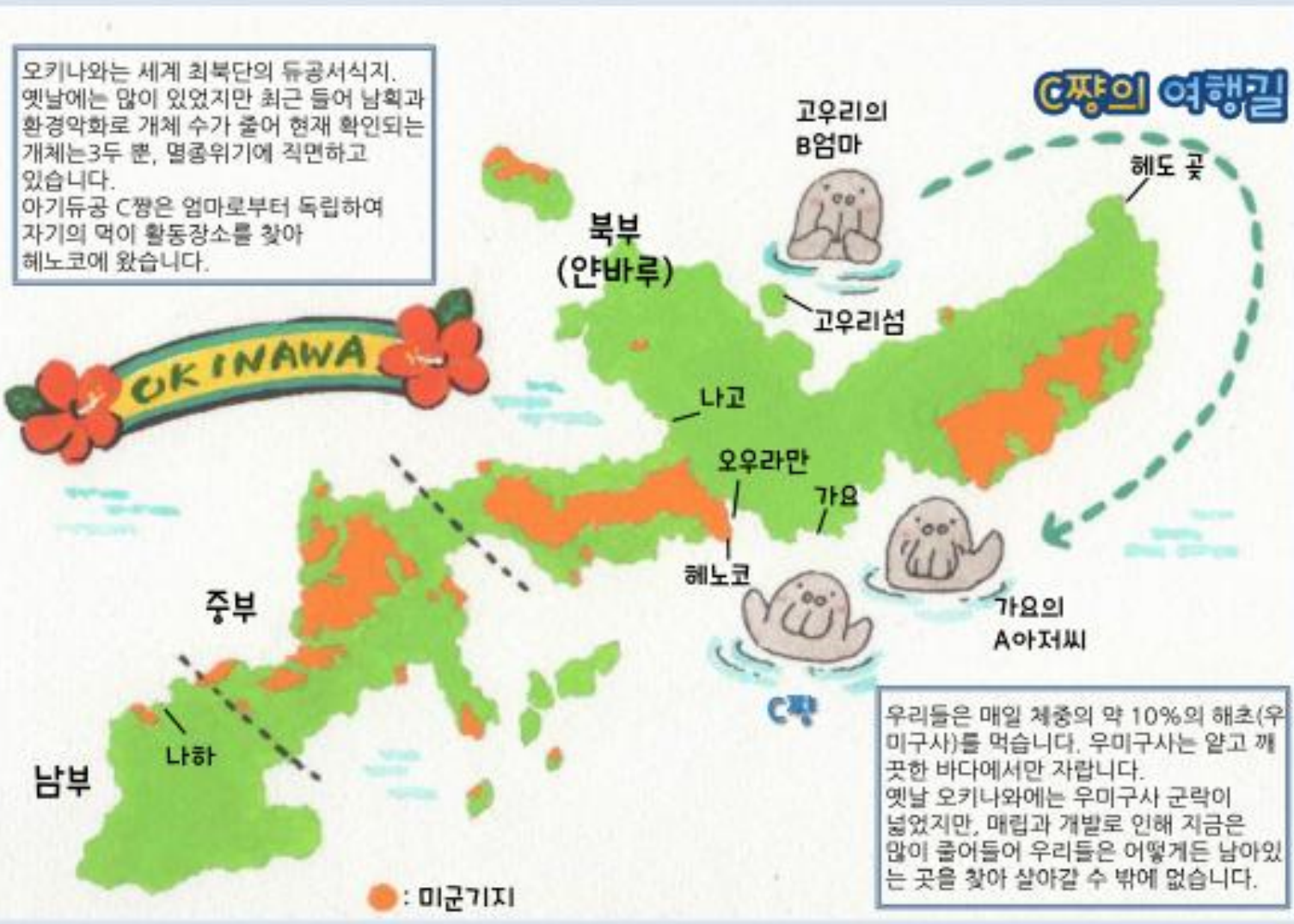

우리들은 매일 체중의 약 10%의 해초(우미구사)를 먹습니다. 우미구사는 얕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랍니다.
옛날 오키나와에는 우미구사 군락이 넓었지만, 매립과 개발로 인해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우리들은 어떻게든 남아있는 곳을 찾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C짱 이야기

C짱은 서해안 고우리섬에서 B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C짱이 점점 자라 먹는 양이 늘어나자 서해안의 우미구사로는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엄마는 C짱과 함께 우미구사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미구사가 풍부했던 바다는 개발 등으로 인해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은 기운을 다시 내어 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A아저씨가 있는 가요는 어떨까?

넓진 않지만 조용하고, 우미구사가 맛있는가요. C짱은 A아저씨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한창 성장기인 C짱의 식욕은 상상이상. 가요의 우미구사도 부족해지고 말았습니다. C짱은 다른 먹이 활동장소를 찾아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헤노코·오우라만의 좋은 장소를 발견! A아저씨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C짱은 그곳에서 많은 우미구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미군 캠프 슈와브의 바닷가. 독립한 C짱이 살아가기 위해 겨우 찾은 장소를 인간들이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매립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C짱은 살아갈 장소를 잃어버리고 말겠지요.

일러스트레이션/히로가와 사에코

C짱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

[연락처]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 http://teamzan.ti-da.net 메일 hokugen.19@kjd.biglobe.ne.jp (스즈키 마사코)

황준서(영국 브래드퍼드대학교 평화학 석사과정)

나토의 환경책임: 독일 및 이탈리아 나토군 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증언과 현장 조사

〈요약〉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안보연합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둔하고 있는 독일 및 이탈리아 내 기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원인, 나토 및 주둔국 정부의 대응, 나토군 기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나토군이 수립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다뤘다.
NATO는 1960년대부터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와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을 두 축으로 환경정책을 집행해왔다. 그러나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 주민 인터뷰 등 현장 조사 결과 NATO 기지에서는 전투기 및 헬리콥터 (야간)비행 소음, 기름 유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면증, 신경쇠약 등 정신적인 질환은 물론 해당 지역의 높은 암 발병률이 군사기지 환경오염이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특히 무기실험장, 무기폐기장, 사격장 등 여러 군사시설들이 밀집한 이탈리아 샤르데냐에 있는 군사기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이름을 본 딴 '키라 증후군(Quirra Syndrome)'이라는 특이 질병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NATO는 특별군사협정(SOFA) 또는 방문군협정(VFA)을 통해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면제받고 있었으며, 환경오염 사실을 인근 주민 및 주둔국 정부에게 통보하거나 오염의 원인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오염 정화책임은 각 회원국들, 더 정확하게는 군사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었으며, 정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환경규제가 강력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유럽연합 환경법에도 군사기지에 관한 면제조항이 있어 군사기지 내·외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공백이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나토군의 환경정책은 약 60년 동안 집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해결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서론

군대는 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환경 오염 주체로 빈번하게 지목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환경보호 관련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Westing 1988; Coates et al. 2011). 다만 이러한 면제조항에 힘입어 군대가 완전히 환경보호를 외면하려는 의도나 수단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안보기구연합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960년대부터 자신들만의 환경법 체계를 수립해왔으며(NATO 2014), 여러 군사조직들이 군사활동과 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왔다.
그렇다면 군대가 실제로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군대의 환경정책이 군사시설과 작전 지역 인근 주민들과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관련 논문, 언론 보도, 독일과 이탈리아 현장 조사 및 기지 주변 주민들의 증언 을 토대로 나토의 환경정책과 실제 정책 집행 사례들을 다룬다.

먼저 나토 관련 환경문제들을 살펴보고, 독일과 이탈리아 나토군 기지들의 문제점을 나열한다. 이를 토대로 나토가 수립한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더 나아가 나토의 환경책임, 구체적으로 투명성과 실질적인 대응 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 내 미군 및 나토의 환경 발자국

군대가 전시 및 평시 모든 경우에 자연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끼친다는 점은 매우 잘 알려져있다 (Reuveny et al. 2010; Harris 2015). 마찬가지로 1990년대 나토의 발칸제도 군사개입 역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여러 연구자들이 나토의 코소보 및 구 유고연방 지역 공습 이후 산림 황폐화와 지하수 오염 등 여러 부정적인 자연환경 변화를 발견했다. 자연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대한 이러한 오염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전히 그 누구도 정화하지 않았다 (UNEP 2001; Schwabach 2000; Clarke 2002; Neuhauser 2015). 이외에도 미군과 나토는 환경오염 사고들이 발생했거나 했다는 의심을 받는 군사훈련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표 1 참고)

국가	기지 명칭	사용 기간	주요 환경 문제
영국	그린햄 커먼 공군기지 (RAF Greenham Common)	1941 – 1991	열화우라늄 오염 의혹
	파일링데일스 공군기지 (RAF Fylingdales)	1953 – 현재	전자파
	레이켄히스 공군기지 (RAF Lakenheath)	1941 – 현재	항공기 소음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Ramstein Air Base)	1952 – 현재	항공기 소음
	안스바흐 미군기지 (USAG Ansbach)	1991 – 현재	항공기 소음,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
	슈팡달렘 공군기지 (Spangdahlem Air Base)	1952 – 현재	기름 유출
	바드 크로즈나흐 공군기지(Bad Kreuznach Air Base)	1945 – 2001	반환 이후 잔여 오염물질
	글라이키르헨 공군기지 (Air Base Geilenkirchen)	1982 (NATO) – 현재	항공기 소음 (네덜란드도 피해)
	비트뷔르크 공군기지 (Bitburg Air Base)	1952 – 1994	화학물질 오염
	라인마인 공군기지 (Rhein-Main Air Base)	1945 – 2005	기름 오염
	만하임 미군기지 (USAG Mannheim)	1945 – 2011	산업용 세척제(TCE)로 인한 지하수 오염
	게르메샤임 미군 보급창 (U.S. Army Depot Germersheim)	1951 – 현재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바바리아 미군기지 (USAG Bavaria)	1947 – 현재	불발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마인츠 미군 보급창 (U.S. Army Depot Mainz)	1945 – 1989	화학물질로 인한 지하수 오염

이탈리아	살토 디 퀴라 (Salto di Quirra)	1956 – 현재	높은 희귀 질병 발병률, 열화우라늄과 다이옥신으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데치모마누 공군기지 (Decimomannu Air Base)	1954 – 현재	기름 유출, 지하수 오염
	라 마달레나 정보기지 (NSA La Maddalena)	1972 – 2008	방사능 유출, 지하수 오염
	니체미 해군 통신소 (Naval Radio Transmitter Facility Niscemi)	1991 – 현재	해로운 전자파 노출, 니체미 자연보호구역 파괴
	에델레&달 몰린 기지(Camp Ederle & Dal Molin)	1951 – 현재	지하수 오염 및 환경 질 저하
그린란드 (덴마크)	캠프 센츄리 (Camp Century)	1959 – 1967	방사능 유출, 화학물질 오염, 반환 기지 방치
스페인	로따 해군기지 (Rota Naval Base)	1953 – 현재	기름 오염, 보호종 동식물 위협
포르투갈	라헤스 공군기지 (Lajes Air Base)	1934 – 현재	높은 질병 발병률, 방사능 유출, 화학물질 오염

그러나 오염정화과정에서 나토와 미군의 책임을 제한해주는 나토 SOFA 또는 방문군협정(VFA)이라는 특수한 법률을 통해 위와 같은 환경문제들은 나토와 미군의 입장 위주로 처리된다. 또한 Hamblin(2010)에 따르면 나토의 환경정책은 닉슨 행정부의 팽창주의에서 기인했으며, 따라서 나토가 합의제에 기반한 기구이지만 사실상 나토의 환경정책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OFA 체제는 주둔국들의 환경법에 관계 없이 환경문제에서 미군의 법적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 (Wegman and Bailey 1994). 더 나아가 Bremberg(2018)는 환경문제 관련 나토의 정책 결정들이 나토 내부 전문가 위원회들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환경 의제들은 나토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자신의 작전과 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시도들은 실제로는 적절하지 못한 대응과 투명성 부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나토가 환경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요구하는 캠페인들을 조직해왔다 (Access Info Europe 2009; War Resisters' International 2013; Weir 2014). 이들은 법적 공백과 정치적 의지 부재, 군사 기밀주의가 오염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으며, 나토 내 유럽 회원국들이 서명한 오르후스 협약과 여러 국제 환경법에 보장된 정보접근권, 깨끗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 등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저자가 독일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 안스바흐를 방문했을 당시 하늘은 미 공군 아파치 헬기(AH-64)와 치누크 헬기(CH-47)가 평시 훈련을 진행하기 딱 맞게 화창했다. 지역 주민들은 군사기지 인근에 살면서 겪는 소음 문제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 항공기들은 주거지역 위를 날아다니기도 했는데, 심지어 지붕 가까이까지 다가오기도 했다. 한 주민은 조종석에 앉아있는 군인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헬기가 가까웠다고 말했다. 안스바흐 주민들에 따르면 소음 문제는 밤에도 계속되었는데, 때때로 새벽 2시까지 이어지기도 있다. 이들은 미군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안스바흐 지방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야간 비행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스바흐 시민들은 지하수 오염 의혹을 제기했다. 어느 날 개울가가 몇일동안 화학물질 냄새로 뒤덮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 미군 병사들은 개울가와 연결되어 있던 기지 인근 호숫가에서 낚시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물론 미군도 화학물질 냄새의 원인에 대해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지 말라고 권고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에츠 랑츠(Etz Langt's)는 안스바흐 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9,000명의 서명을 받아 미군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군은 이를 수용하기를 거절하였다. 또한 바바리아 주 정부나 독일 연방정부도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 않았다. 군용 헬리콥터들이 유발하는 대기오염(미세먼지)는 방치된 상태에 놓인 또 다른 환경문제였다.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카이저슬라우테른(Kaiserslautern)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토군 기지인 람슈타인 공군기지가 있다. 이 기지는 미 공군 유럽 및 아프리카 사령부(USAFE-AFARICA), 나토 공군사령부(AIRCOM)가 위치하고 있기로 유명하다. 지역 주민들은 거의 10분마다 이착륙을 반복하는 전투기들이 지나다니는 항로 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지에는 수많은 전투기 부대와 군용 수송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이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카이저슬라우테른 지방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안스바흐와는 다르게 이 지역 주민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비행훈련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지하수 오염, 탄저균(및 생물무기 실험) 처리, 기지 인근 숲지대에 비상 연료 방출(fuel jettison, fuel dumping 이라고도 함) 등이 있다. 증언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라인란트-팔라티네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공공 보건에 위협을 가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나토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나토의 믿음직스러운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를 도시의 군사적 이용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보다 우선시하고 있었다. 야생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는 또다른 문제였다. 우선 람슈타인 공군기지 자체가 자연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야생 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50헥타르에 달하는 삼림지대를 벌채하여 새로운 군사병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어서 미군 및 나토 주둔 기지가 가장 많은 나토 회원국이다. 이 군사시설들은 이탈리아에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샤르데냐 섬에 집중되어 있다 . 최근 샤르데냐 섬에서는 여러 환경문제들이 보도되었고, 몇몇 사례들은 특히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은 샤르데냐 섬 남동부에 위치한 키라 마을 주변 군사시설들이다. 이 작은 마을은 "키라 신드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는 키라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희귀병들을 통칭한다. 주요 질병들로는 눈 암, 귀 암, 백혈병,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 기형아 (인간 및 동물) 등이 있다. 이 질병들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열화우라늄 또는 기타 군사활동 및 무기실험이 키라 신드롬은 물론 키라 주변 군사기지 내 군인들의 사망원인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Zucchetti 2006; Cristaldi 2013; Gatti et al. 2013). 해안가에 위치한 키라 사격장에서는 매일 폭격 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륙 쪽에 있는 마을 인근 기지에서는 신형 무기실험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 기지에서는 구형 무기들을 지하에서 폭파하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키라 신드롬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현상에 대응하지 않으려는 자세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치명적인 질병들의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샤르데냐 주정부는 물론 이탈리아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문제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키라 신드롬을 조사한 독립 연구자에 따르면 군사 실험과 폭격 훈련이 유발한 높은 열로 주변 환경이 인공적으로 변화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미세입자들이 인체로 들어가 위험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나토는 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조사를 진행하거나 키라 신드롬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샤르데냐 사람들의 분노는 주정부와 중앙정부, 나토를 향하고 있었다. 2007년부터 키라 군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매달 샤르데냐 섬 내 중앙정부 사무소 앞에서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주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행동을 해왔다. 시위대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법에 따라 이탈리아는 자발적으로 전쟁 준비를 포기하였으나, 샤르데냐는 나토는 물론 나토 회원국이 아닌 제3의 국가들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이스라엘이 나토군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Israel Defence Forces 2011; Reynolds 2015). 그러나 샤르데냐 섬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탈리아 법률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에 폐쇄된 샤르데냐 섬 북부 라 마달레나 기지 내부 환경오염 사실과 정화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군 부대는 어떠한 정화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환경오염의 원인 또한 밝히지 않고 떠났다 (Popham 2003).

나토가 책임지게 만들기

더 규모가 큰 민간 산업 부문에 비하면 군사 부문이 국제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보일 수도 있다. 분명 기업과 산업은 (외부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서) 수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해왔고 기후변화 악화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군대가 민간 영역에 비해 환경문제를 덜 일으켰다 하더라도, 군대 자체가 유발한 인간 건강 및 자연환경 문제들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나토 군사활동 또한 예외일 수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물론 스페인, 덴마크 그린란드 섬 등 나토 회원국들의 땅에서도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의문들을 유발한다. 나토의 환경정책은 목표가 무엇인가? 어떠한 환경문제를 다루고자 하는가? 나토의 환경정책은 회원국들의 환경법 및 제도와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가? 어떠한 제도들이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미군 및 나토군 담당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바 이 질문에 대한 군대 측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더 자세한 연구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군대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다. 그러나 60년 동안 환경정책을 수립해왔다는 나토의 주장이 무색하게 시민들의 저항과 역사적 기록들을 고려할 때 환경과 공공 보건 보호에 있어서 나토의 실제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론

나토의 환경 발자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물론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응해준 지역 주민들과 언론 보도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SOFA,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군사 기밀주의가 합쳐져 환경법상 공백이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나토는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두 나라에서 나토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중앙정부 모두 평범하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들 대신 나토의 편에 서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인권, 특히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군사기지 관련 문제에서 기본적인 환경권 및 인권 보장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주로 국가안보의 미명 아래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이 국가안보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인지 질문할 수 있다. 현장조사 중에 만난 주민들은 어떤 단체의 상근활동가들이 아니라 항공 소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원인불명 질병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역경은 나토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부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책임을 포기하며, 나토와 협력하는 한편 군사기지 인근 지역사회를 정치사회적으로 주변화하고 배제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 나토의 환경보호정책은 특히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나토 군사작전의 기밀유지가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고 있어 환경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 기밀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번째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환경오염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나토의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둘째로 나토는 지역 주민들에게 군사훈련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경오염 관련 정화조치나 보상조치를 시행할 능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실패들로 인해 나토의 환경발자국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책임 문제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참고자료

Access Info Europe (2009) Five Principles for an Open and Accountable NATO. Access Info Europe. https://www.access-info.org/wp-content/uploads/NATO_Openness_Principles.pdf Accessed 5 October 2018.

Bremberg, N. (2018) European Regional Organizations and Climate-Related Security Risks: EU, OSCE and NATO.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018/1.

Clarke, R. (2002) Yugoslavia. In: Carter, F.W. and Turnock, D. (editors)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Central Europe.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396-416.

Coates, P., Cole, T., Dudley, M. and Pearson, C. (2011)
Defending Nation, Defending Nature? Militarized Landscapes and Military Environmentalism in Brita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History 16, 456-491.

Cristaldi, M., Foschi, C., Szpunar, G., Brini, C., Marinelli, F. and Triolo, L. (2013) Toxic Emissions from a Military Test Site in the Territory of Sardinia,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0, 1631-1646.

Gatti, A.M., Montanari, S. and Capitani, F. (2013) The Quirra Syndrome: Matter of Translational Medicine. In: Vaseashta, A. and Khudaverdyan, S. (editors) NATO Advanced Sensors for Safety and Security. Springer. 55-64.
Harris, P. (2015) Militarism in Environmental Disguise: The Greenwashing of an Overseas Military Base.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9, 19-36.
Israel Defense Forces (2011) The Israeli and Italian Airforces Train Together in Joint Exercise in Sardinia.
https://www.idf.il/en/minisites/military-cooperation/the-israeli-and-italian-airforces-train-together-in-joint-exercise-in-sardinia/ Accessed 2 November 2018.
NATO (2014) Environment - NATO's stake.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91048.htm Accessed 5 October 2018.
Neuhauser, J.A. (2015) U.S. Military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Cleanup in Contingency Environments. Environmental Law 45 (1), 129-179.
Popham, P. (2003) 'Cover-up' fury after US nuclear sub is grounded.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cover-up-fury-after-us-nuclear-sub-is-grounded-78110.html Accessed 15 October 2018.

Potocnik, J. (2014) Answer given by Mr Potocnik on behalf of the Commission (31.10.2014).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8-2014-006724-ASW_EN.html Accessed 2 November 2018.
Reuveny, R., Mihalache-O'Keef, A.S. and Li, Q. (2010) The effect of warfare on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47 (6), 749-761.
Reynolds, E. (2015) Dark truth behind Sardinia's holiday oasis. News.com.au. https://www.news.com.au/finance/business/other-industries/dark-truth-behind-sardinias-holiday-oasis/news-story/8a372818be6d3d0d2c969ab24914df05 https://www.news.com.au/more-information Accessed 5 2 October November 2018.
Schwabach, A. (2000) Environmental damage resulting from NATO military action against Yugoslavia.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25 (1), 117-140.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2001) Depleted Uranium in Kosovo: Post-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 UNEP.
War Resisters' International (2013) Sicily Against War: Resisting the Niscemi US Military Base. https://www.wri-irg.org/en/story/2013/sicily-against-war-resisting-niscemi-us-military-base Accessed 5 October 2018.
Wegman Jr., R.A. and Baily, H.G. (1994) The Challenge of Cleaning Up Military Wastes When U.S. Bases Are Closed. Ecology Law Quarterly 21 (4), 866-945.
Weir, D. (2014) ISAF's environmental legacy in Afghanistan requires greater scrutiny. Toxic Remnants of War.
http://www.toxicremnantsofwar.info/isafs-environmental-legacy-in-afghanistan-requires-scrutiny/ Accessed 5 October 2018.
Westing, A.H. (1988) The Military Sector vis-à-vis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25 (3), 257-264.
Zucchetti, M. (2006)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Effects in the Quirra Area, Sardinia Island (Italy) and the Depleted Uranium Case. Journ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y 7 (1), 82-92.
* 이 연구는 브래드퍼드대학교 제럴드 호젯 기금과 녹색연합에서 지원받았으며, 영문보고서는 2018년 11월 NATO WATCH Briefing Paper 제66호로 출판되었습니다.

해외 주둔군지위협정 조사 중간보고서

2018년 3월 오키나와 현청

1. 시작하며

(1) 미일지위협정의 현황과 과제

(2) 조사목적

2. 조사내용

(1) 조사방침

(2) 사전조사

① 문헌 등 조사

② 조문 비교 조사

(3) 현지조사

① 일정 및 방문처

② 면담개요(독일)

가. 람슈타인-미젠바흐 시장(랄프 헤일러 씨)

나. 바일러바흐(Wilerbach) 시장(아냐 파이퍼 씨)

다. 라우펠트 촌장(칼 요셉 융커 씨)

라. 항행연방감독기관(BAF)(니콜라우스 헤르만 국장)

마.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DFS) (안전·안보·군사부문관리자 오스만 Safouan 씨)

③ 면담개요(이탈리아)

가. 레오나르도 트리카리코 전 NATO 제5전술공군사령관

나. 람베르토 디니 전 총리

다. 아비아노 부시장(다닐로 시그노레티 씨)

3. 조사결과(요약)

4. 타국 지위협정 조사에 대한 이후 과제와 대응

(1) 이후 과제

(2) 향후 대처

1. 시작하며

(1) 미일지위협정의 현황과 과제

미일지위협정은 1960년(쇼와35년) 미일간 체결된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음. 이 동안 미군 등에 의한 다양한 사건・사고, 미군기지 기인의 소음문제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오키나와현에서는 1973년(쇼와47년) 본토복귀부터 2017년(평성29년) 12월 말 까지 미군 등에 의한 형법범이 5,967건, 항공기관련 사고가 738건 발생하는 등 소음문제에서는 가테나비행장 및 후텐마비행장 주변 주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야간・이른 아침 비행금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여러번 제기하는 등 일상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음. 또한,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오키나와에서는 2016년(평성28년) 미군속 남성에 의한 여성 시체유기, 강간치사 및 살인의 용의로 체포・기소 된 사건과 오스프리가 나고시 마을 근처에서 추락, 2017년(평성29년)에 히가시촌 민간지에 CH-53E 불시착・염상, 마찬가지로 CH-53E가 후텐마제2소학교 창문에 추락, 2018년(평성30년)에 들어서도 미군 헬기의 시설 외 민간지역 연달아 불시착, 오스프리의 엔진 커버의 추락 등 현민생활에 큰 영향과 불안을 주는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오키나와현 밖에서도 2018년(평성30년) 2월에 미사와기지(아오모리현) 소속 F-16 전투기가 이륙직후 엔진 화재가 발생, 기지 근처의 오가와하라호에 연료 탱크 2개를 투기하여 연료유가 유출되어 재첩과 빙어 등 전면 금어로 몰아넣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사건・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미군에 의한 아국의 시설・구역 사용과 아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대해 규정한 미일지위협정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왔음.

미일지위협정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2000년(평성12년)에 오키나와현이 11항목의 미일지위협정의 재검토에 관한 요청을 미일 양 정부에 제출했으며, 미군제공시설 등이 소재한 주요 도도부현으로 구성된 섭외지사회[1]나 일본변

호사연합회 등 단체 뿐 아니라, 2003년(평성15년)에는 자민당 국회의원이 만든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실현하고, 미일의 참다운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모임」도 개정안을 작성하여 미일지위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오키나와현은 2017년(평성29년) 9월에 2000년(평성12년)에 실시한 재검토에 관한 요청 이후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미일 양 정부에 요청하였음. 2018년(평성30년) 2월에는 공명당도 미일지위협정 검토 워킹팀을 당내에 설치하고 있음.

지금까지 미일 양 정부는 「환경보충협정」이나 「군속에 관한 보충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전히 많은 기지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개선으로 대응하고 있음.

오키나와현으로서는 미군기지를 둘러싼 여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써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측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의 운용개선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미일지위협정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미군기지가 집중 된 오키나와라고하는 하나의 지역 문제가 아닌, 아국의 외교・안전보장과 국민의 인권, 환경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극히 국민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미일 양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임.

(2) 조사 목적

오키나와현으로서는 미일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일본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미일지위협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나 협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국

---

1) 渉外関係主要都道府県知事連絡協議会(섭외 관계 주요 도도부현 지사 연락 협의회)의 약자로 미군제공시설 등이 소재한 15개 도도부현※이 참석하고 있음(회장: 구로사와 유우지, 가나가와현지사)
※ 홋카이도, 아오모리현(부회장),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회장),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교토부,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부회장), 오키나와현(부회장)(역주)

민 전체에 알릴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미군전용시설이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오키나와의 문제로 다루어져 이 문제에 대한 이해나 재검토에 대한 의론이 국민적인 것으로 도달하지 않는 것이 실정이라고 생각됨.

오키나와현의회에서 타국 지위협정에 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 전국지사회에 설치되어있는 「미군기지 부담에 관한 연구회」의 의론에서도 미일지위협정이나 미군기지가 타국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세계적인 일반적 관점을 알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미일지위협정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화하여, 협정의 재검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타국 지위협정과 미군기지의 운용상황에 대해 조사를 수행함.

2. 조사내용

(1) 조사방침

미일지위협정은 협정본문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일합의를 포함한 큰 법체계로 되어있는 것에 외에도 협정의 실시에 대해 협의하는 미일합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사내용이 비공개로 되어있어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그 협정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러한 점에서 미일지위협정을 법적인 측면에서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몹시 곤란하며, 이것을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타국과 비교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본다면, 타국에서도 역시 지위협정에 따라 각각의 국내법령과 양국 간 합의사항 등이 존재하고 있어 모든 것을 세부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한편, 일본과 같이 미군이 주둔하는 타국에서도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와 미군 훈련에 의한 문제 등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 사안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파견국과 수입국 간 체결한 지위협정과 수입국의 국내법령, 양국 간의 합의사항 등이 반영된 형태임.

이를 위해 각 사안에 대한 각 국의 대응(사례)를 비교하여 일본과 타국의 지위협정과 미군기지의 운용의 차이가 선명해짐과 동시에 타국의 대응의 차이를 만들어 낸 지위협정과 국내법령의 적용상태 등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관점에서, 2017년(평성29년)에 있어서 타국과 일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함. 조사항목으로는 최근 오키나와현에서 미군기에 의한 사고나 훈련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탕으로, 미군에 대한 수입국의 국내법의 적용, 기지의 관리권, 훈련・연습에 대한 수입국의 관여, 항공기 사고의 대응을 중심으로 조사함.

조사대상국은 일본처럼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지위협정 개정이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실적이 있고, 미군기에 대한 사고나 훈련에 관한 여러 문제로 일본과 같은 사례 유무 등의 관점에서 독일, 이탈리아 2개국을 선정함.

(2) 사전조사

(1)의 조사방침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전, 문헌 등 조사와 조문 비교 조사를 실시하여 양국의 지위협정 개정과 새로운 약정[2]의 체결 경위, 미일지위협정과의 조문을 비교함.

① 문헌 등 조사

독일, 이탈리아의 지위협정 개정과 새로운 협정의 체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과 현지 신문 등을 조사함.

가. 독일의 독일보충협정[3] 개정 경위

a. 독일보충협정 개요

독일보충협정은 NATO회원국 중 독일 국내에 상주하는 국가의 군대의 지위와 독일 국내 기지의 사용에 대해 규정한 협정으로, 1959년 체결되었음. 그 후 1971년, 1981년, 1993년에 개정 되었고, 특히 1993년의 개정은 대규모로 이루어졌음.

b. 1993년 개정 도달 경위

당초 체결된 독일보충협정은 점령군으로서의 지위에서 유래한 권리를 계속 유보하기 위한 전승 3개국 군대의 이익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영역주권과 국민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독일 측에 불리한 점이 많아 1980년대에는 환경법, 건축법, 항공법 등 독일 국내법령을 주둔군 활동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졌음.

그러던 중 1988년 주둔군 항공기에 의한 큰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 보충협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아졌음.

1990년 동서독일의 통일 후, 이러한 국민여론을 배경으로 독일정부는 NATO군 파견국을 대상으로 독일보충협정 개정을 신청하였음.

c. 개정협상

독일 측은 개정협상에 있어 아래의 3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 것으

---

2) 원문에서는 取極로 표현하였으나 한국에는 동일한 표현이 없음. 일본에서는 取極을 Arrangement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외교부의 기관간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를 참고하여 약정으로 표현함

3) 원문에서는 본(Bonn)보충협정으로 표기하였으나, 적절한 표현으로는 나토군 지위협정에 대한 보충협정(프레드리히에버트재단. 2003.독일 주둔 외국군구성원의 법적지위.p3)으로 사료되나, 한국에서는 통상 독일보충협정으로 표기하여 이와 동일하게 표기

로 되어있음.

i. 상호성 원칙

독일에 주둔하는 동맹군의 지위를 타 동맹국내에 주둔하는 독일 연방군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ii. 내부적 평등성 원칙

독일에 주둔하는 동맹군의 권리가 독일 연방군의 국내 지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동맹군도 독일연방군과 마찬가지로 독일법에 구속되어야 한다.

iii. 외부적 평등성 원칙

독일 국내에서 동맹국의 지위가 다른 NATO 회원국에 대한 지위에 준하거나 동일하다.

개정협상에 임한 독일대표단에는 연방정부 뿐 아니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니더작센주, 라인란트팔츠주의 대표자도 참가하고 있음.

나. 이탈리아의 새로운 협정체결 경위

a. 미국-이탈리아 2국 간 협정 개요

1951년 NATO군 지위협정이 체결되어, 1953년 발효한 다음해인 1954년, 미국과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국내 기지시설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되는 「NATO 조약 가입 당사국의 양국 간 기지시설 사용 협정(BIA)」를 체결하고 있으나, 이 협정은 이탈리아 국회 결의에 의해 현재도 비공개 상태임.

1995년에는 BIA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이탈리아 공화국 국방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양해각서의 전문에는 NATO조약과 NATO군 지위협정, 그리고 BIA의 틀을 기반으로 미국-이탈리아 간 방위 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며, BIA와 기타 관련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해각서를 설정하고 있음. 이것은 유럽의 미소냉전이라는 군사대립 구조의 종말을 맞아 미국-이탈리아 간에도 정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약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음.

b. 사고가 계기가 된 새로운 협정에 의한 규제 강화

양해각서 체결 3년 후 1998년에 발생한 미군기에 의한 로프웨이 절단 사고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서는 반미군 감정이 높아졌음. 이러한 국민감정을 배경으로 양국은 이탈리아에서의 미군기 훈련비행에 관한 미국-이탈리아 위원회를 출범함. 위원회에 의해 정리된 「트리카리코-프루어 보고(Report of the Tricarico-Prueher Bilateral Commission)」는 미국 국방장관과 이탈리아 국방장관에 의해 합의되어 이탈리아에 대한 미군기의 비행은 대폭 규제 받게 되었음.

(주)「① 문헌 등 조사」의 기술은 아래의 문헌 기재를 참고, 인용하였음

○ 『각 국 간 지위협정의 적용에 관한 비교론 고찰』나이가이 출판(2003)
마쓰우라 가즈오「제2장 독일의 외국 군대 주둔에 관한 법제」
혼마 히로시 「제4장 미군의 이탈리아 주둔에 관한 협정의 구조와 특색」

○ 혼마 히로시『외국의 입법 No.221(독일 주둔 NATO군 지위보충협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국립국회도서관조사 및 입법고사국(2004)

○ 이세자키 겐지, 후세 유진『주권 없는 평화국가-지위협정의 국제비교에서 보는 일본의 모습』슈에이사(2017)

② 조문 비교 조사

미일지위협정, 독일보충협정(독일), 미국-이탈리아 양해각서(모델실무약정)의 「국내법의 적용, 기지의 관리권」, 「연습, 훈련」, 「경찰권」에 관한 주요한 조문 등에 대해 비교표를 작성하여 분석하였음. 주로 아래 사항에 대해 독일, 이탈리아와의 차이가 명확해졌음.

가. 수입국의 국내법 적용

일본은 「일반 국제법상 주둔이 인정된 외국 군대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입국의 법령은 적용하지 않고, 이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

해서도 같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미일지위협정에도 일부 법령을 제외하고 일본 국내법을 적용하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주일미군에는 일본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독일에서는 독일보충협정 제53조에 파견국 군대의 시설구역 사용에 있어 독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명시되는 등 제45조에 시설 외 연습과 훈련에 대해 제46조에 공역 연습에 대해 각각 독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
이탈리아에서는 모델실무약정 제17조에서 미군의 훈련행동 등에 대해, 비군사적 사항 및 군사적 사항에 관한 이탈리아 법규가 있으며 특정분야의 유효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명기되어 있음.

나. 기지 관리권 및 수입국의 출입권

미일지위협정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시설 및 구역에 대해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 측에 의한 시설・구역 내의 출입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독일에서는 독일보충협정 서명 의정서에 독일 연방, 주, 지자체의 출입권을 명기되어 있는 등 긴급 상황과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는 출입도 인정받고 있음(제53조의 4②a).
이탈리아에서는 모델실무약정 제6조에서 기지는 이탈리아 사령부 하에 위치하여, 이탈리아의 사령관은 기지의 모든 구역에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제1항 및 제5항).

다. 훈련, 연습에 대한 수입국의 관여

미일지위협정에는 미군에 의한 훈련과 연습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 측에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음. 더욱이 훈련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일본 측에 통보되지 않고, 일본정부는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훈련・연습을 진행하는 구역에 관해서도 일본정부는 1975년(쇼와50년)경에는 제공 시설・구역 외의 연습은 안보조약 취지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1987년(쇼와62년)에는 실탄사격 등을 동반하지 않는 비행훈련이라면 제공시설・구역 외에도 인정하는 입장으로, 현재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독일보충협정 제53조에 독일 국내로 이동하는 부대에 의한 야

외연습구역, 훈련구역 및 사격장의 사용에 관한 독일 측의 허가, 제45조 시설 외 연습에 대한 독일 국방장관의 동의, 제46조의 공역연습의 독일 측의 승인이 각각 명기 되어있으며, 파견국 군대에 의한 훈련, 연습에는 수용 국가인 독일의 허가나 동의, 승인이 필요함.
이탈리아에서는 모델실무협정 제17조에서 미군에 의한 훈련행동 등에 대해 이탈리아 국방장관에게로 사전 통보와 이탈리아 측에 의한 조정, 승인이 명시되어있음. 더욱이 1995년 모델실무협정 체결 3년 후(1998년)에 발생한 미군기에 의한 로프웨이 절단사고를 계기로 미군에 의한 훈련 허가 제도와 훈련비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

라. 경찰권

경찰권에 관해서는 미일지위협정과 NATO군지위협정의 본문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규정 되어있음. 양 협정 공통으로, 시설・구역 내에서는 파견국의 군사경찰은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시설・구역 외에서는 수입국 당국의 약정에 따라 그 사용은 파견국 군대의 구성원 간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미일 간에는 미일지위협정의 합의의사록에서 시설・구역 내의 모든 사람 또는 재산, 시설・구역 외의 미국 재산에 대해 일본 당국은 수색, 압류 또는 검증을 행할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독일에서는 독일보충협정 제28조에서 독일 경찰에 의한 제공 시설・구역 내의 임무수행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이탈리아에서는 모델실무약정 제15조에서 이탈리아 군사령관이 그 임무수행을 위해 또한 이탈리아 주권 옹호자로서 기지 내의 모든 구역 및 시설을 출입 권한을 명시하고, 미국 사령관이 인정받은 경찰권에 대해서도 이탈리아 현행법과 일치하거나 이탈리아군 사령관과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1. 국내법의 적용, 기지 관리권에 대해

미일지위협정[1960년 체결]	독일보충협정(독일)[1993년 개정]	미국-이탈리아 모델 실무 협정 [1995년 체결]
제3조 1. 합중국은 시설 및 구역에서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국 정부는 시설 및 구역의 유지, 경호 및 관리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에의 출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합중국 군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협의에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하거나 또한 그 근방의 토지, 영수(領水) 및 공간에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 협의에서 앞서 기술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에서의 작업은 공공의 안전에 적절한 고려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 일본국에 대해, 일본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또한 이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은 삼가는 것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 등 그 가족의 의무이다.	**제53조** 1. 군대 또는 군속기관은 배타적 사용을 제공 받은 시설 구역 내에서 방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시설 구역의 사용에 대해서는 독일 법령이 적용된다. 다만, 본 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경우, 그리고 군대, 군속기관, 그 구성원 및 가족의 조직, 내부기능 및 관리 등 그 외 내부 사항에 대해 제3자 권리에 대해 또는 인접한 지자체 혹은 일반공중에 대해 어떠한 예견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권한이 있는 독일 당국 및 군대 당국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이견도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는 동시에 협력한다. 2. 본 조 제1항 제1문은 시설구역 상공에 관해 취하는 조치에도 준용된다. 다만, 항공교통의 방해가 되는 조치는 독일 당국과의 조정을 거친다. 제57조 제7항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서명의정서(제53조에 관하여)** 4②(a) 군대 당국은 독일 연방, 주 및 지자체의 각 단계에서 각각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해 독일 당국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지원(사전통고 후 시설 구역의 출입을 포함)한다. 시설구역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관할하고 있는 독일연방 당국은, 요청에 따라 군대 당국을 지원한다. 긴급 상황과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군대 당국은 독일 당국이 사전 통고 없이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군대 당국은 독일 당국과의 동행 여부는 그 때마다 결정한다.	**제6조 (사령부)** 1. 기지는 이탈리아 사령부 하에 위치한다. 아래에 명시된 사령부의 기능은 이탈리아 장교 1명에 의해 행사 된다. (이하 생략) 3. 미국 사령관은, 미국 요원, 장비 및 활동에 관해 전면적인 군사적 지휘권을 가진다. 동 사령관은 미국의 중요한 모든 행동에 대해 사전에 이탈리아 사령관에게 통지한다. 특히 작업행동, 훈련행동, 물자·무기 및 군사 요원 내지 비군사요원의 호송,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내지 사고에 대한 것도 통지한다. 이탈리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중요한 모든 활동에 대해 미국 사령관에게 통지한다. 이탈리아 사령관은 미국의 활동이 이탈리아 현행법을 준수 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미군 사령부에게 그 즉시 권고하는 동시에 즉시 이탈리아 상층당국에 조언을 구한다. (이하 생략) 5. 이탈리아 사령관은 그 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기지 구역에 어떠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한다. 다만, 이후 제15조에 규정한 경우는 별도로 한다. 이탈리아 사령관은 명백하게 건강 또는 공중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미국의 행동을 미국 사령관이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이하 생략) **제17조 (훈련・작업행동)** 1. 모든 훈련행동 및 작업행동의 계획 작성 및 실시는 제5조에 정한 목표 등 목적에 따르며, 어떠한 비군사적 사항 및 군사적 사항에 관한 이탈리아의 법규에서 특정 분야가 유효한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외무성 홈페이지** 「일반 국제법상 주둔이 인정된 외국 군대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입국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고, 이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행위나 미군이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각각의 미군이나 군속 공무집행 행위에는 일본의 법률은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은 미일지위협정이 규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법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mofa.go.jp/mofaj/area/usa/sfa/qa03.html 2018년 3월 23일 접속)		

※1 밑줄은 각 협정 등에 대해 특징적인 부분으로 오키나와현에서 표기함.

※2 독일보충협정 조문 혼마 히로시『외국의 입법 No.221(독일 주둔 NATO군 지위보충협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국립국회도서관조사 및 입법고사국 (2004)에서 인용

※3 미국-이탈리아 모델실무협정 조문 혼마 히로시『각 국 간 지위협정의 적용에 관한 비교론 고찰 (제4장 미군의 이탈리아 주둔에 관한 협정의 구조와 특색)』나이가이 출판 (2003)에서 인용

2. 훈련, 연습에 대해

미일지위협정[1960년 체결]	독일보충협정(독일)[1993년 개정]	미국-이탈리아 모델 실무 협정 [1995년 체결]
지위협정 본문에 연습, 훈련에 관한 규정 없음		
(참고) **현재까지 국회 답변 등** **[1975년(쇼와50년) 3월 3일 예산위원회]** 미키 총리대신 답변(발췌) 「미국의 지위협정에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연습하는 것은 안보조약의 취지에서 볼 때 이것은 위반이라고 하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하 생략)」 「법률적으로 말하면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1974년(쇼와49년) 12월 미해병대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근해의 무인도인 데지마에서 무단으로 구조훈련 한 것에 대한 사항에 관한 질문 **[1987년(쇼와62년) 8월 20일 내각위원회]** 나카소네 외무대신 답변(발췌) 「미군에 의한 실탄 사격 등이 구역 외에서 실시 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상반되지 않는 비행훈련이라면 지위협정 상 시설, 구역 내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예상되는 활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1987년(쇼와62년) 8월 나라현 도쓰카와촌에서 발생한 미군기에 의한 운반용 케이블 절단사고에 관한 질문 **[2017년(평성29년) 1월 7일 기자회견]** 이나다 국방대신 발언(발췌) (미군 훈련에 관하여)「군용에 관계된 문제로 훈련 시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가 일본 측에 통보되는 경우는 통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무언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없는 일입니다.」 ※ 2016년(평성28년) 12월 오스프리 추락 후 공중급유 훈련 재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발언	**제53조(시설 내 연습)** 2② 기동연습 및 훈련을 목적으로 연방공화국 내에서 이동하는 부대에 의한 야외연습구역, 주둔지 훈련 구역 및 주둔지 사격장의 사용은 권한이 있는 독일 당국에 사전에 통지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 당국이 통지 접수로부터 4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그 사용은 허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하 생략) **제45조(시설 외 연습)** 1. 군대는 배타적 사용을 제공 받은 시설 구역 내에서 훈련 목적을 해치지 않고 훈련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 경우, 본 조에 근거하여 연방국방장관의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방위임무 수행 상 필요한 범위 내의 시설 구역 외에서의 기동연습 및 그 외 훈련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2. 본 조 제1항에 기반하여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에 관하여 독일 법령의 관련 규정, 특히 1961년 9월 27일 연방징발법 이행 규정법문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46조(공역연습)** 1. 군대는 권한을 가진 독일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방위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조에 기반하여 연방공화국의 공역에서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을 실시 할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2. 본 조 제1항에 기반하여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독일 공역의 진입 및 사용에 관한 독일 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관의 「기준 및 권고실행 준칙」에 따라 항공설비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 독일의 법규와 연관되는 법률,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 현행 통고, 승인 및 조정 절차가 적용된다. (이하 생략)	**제17조 (훈련・작업행동)** 1. 모든 훈련행동 및 작업행동의 계획 작성 및 실시는 제5조에 정한 목표 등 목적에 따르며, 어떠한 비군사적 사항 및 군사적 사항에 관한 이탈리아의 법규에서 특정 분야가 유효한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 2. 이탈리아의 관계당국은 현행 절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정 및 승인을 위해 해당 시설 구역의 배속되어있는 부대의 훈련행동 및 작업행동에 대해 사전에 이탈리아 사령관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통보 받는 것으로 한다. 이것에 더해 미국 사령관은 해당 시설구역의 배속되어있는 부대 또는 동 시설구역에 전개한 부대의 관련 연습 연간계획을 이탈리아 사령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의 조사 및 승인에 대한 세부 절차는 부속서 ( )의 규정에 따른다. 3. 공동 또는 합동 훈련행동 또는 연습행동은 책임을 가진 이탈리아 군당국과의 조정 후 실시한다. 상기 행동을 실시하는 중 기술적 기항지로서 공항, 항만 또는 시설구역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현행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한다. 4. 항공관제는 이탈리아의 직접적 책임이 있고,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르며, 또한 이 분야에 대해 상호협력을 정하는 협정을 따른다.

3. 경찰권에 대해

<table>
<tr><th>미일지위협정[1960년 체결]</th><th>독일보충협정(독일)[1993년 개정]</th><th>미국-이탈리아 모델 실무 협정 [1995년 체결]</th></tr>
<tr><td rowspan="2">제17조
10(a)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된 부대 혹은 편성대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할 권리가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경찰은 그 시설 및 구역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상기의 시설 및 구역의 외부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군사경찰은 반드시 일본국 당국의 약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또한 일본국 당국과 연락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간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

미일지위협정 합의 의사록
10(a) 및 (b)와 관련하여
2. 일본국 당국은 통상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또한 그 권한을 기반으로 경비하는 시설 내지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재산에 대해, 또는 소재지 여하를 묻지 않고, 합중국 군대의 재산에 대해 수색, 압류 혹은 검증을 행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합중국 군대의 권한을 가진 당국이 일본국 당국에게 이에 대한 수색, 압류 혹은 검증에 동의한 경우 한정하지 않는다.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구역 내에 있는 사람 또는 재산 및 일본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재산에 대해 수색, 압류 혹은 검증을 하는 것을 일본국 당국이 희망하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요청에 따라 수색, 압류 혹은 검증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위 재산으로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것에 대해 재판이 발생할 경우, 합중국은 이 재산을 재판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본국 당국에 양도 한다.</td><td colspan="2">NATO군지위협정 제7조 10항
a 군대의 정규편성된 부대 또는 편성대는 수입국과의 협정의 결과로서 사용하는 숙영지, 건축물 또는 그 외 시설에서 경찰권 수행 권리가 있다. 해당 군대의 군사경찰은 앞서 기재한 시설에 대해 질서 및 안전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앞서 서술한 시설 외부에서는 앞서 서술한 군사경찰이 수입국 당국의 약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은 군대 구성원 간 규율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td></tr>
<tr><td>제28조
1. 본 협정 53조에 관한 서명회의록 제4항②의 규정을 따르며 NATO군 지위협정 제7조제10항(a)호 규정은 해치지 않고, 독일 경찰은 군대 혹은 군속기관의 배타적 사용을 제공 받은 시설 구역 내에서 연방공화국의 공공질서 및 안전이 위험 또는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시설 구역 내의 형사소추 조치를 취할 경우, 파견국은 그 방식에 대해 독일 당국과 협의하고 자국 경찰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그 조치는 지연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독일 측이 희망하는 경우 독일 당국 대표자의 입회 하에 처리할 수 있다.
1. 군대의 헌병대는 공공도로, 공공수송기관, 음식점 그 외 일반인이 출입하는 모든 장소를 순찰 경계하며, 군대 구성원 혹은 군속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 행사의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혹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독일 당국과 군 당국 간 합의하는 것으로 하며, 이 당국은 긴밀하게 상호 연락을 유지하도록 한다.</td><td>제15조 (기지보안 및 경무 책임)
2. 이탈리아 사령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한 이탈리아국 주권을 지키는 옹호자로서 기지 내의 모든 구역 및 시설에 출입한다. (이하 생략)
3. 기지 외에서 기지의 보안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이탈리아 당국에 있다. 상기 기지 외에서의 보안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의 책임을 지는 당국이 [미국의] 관할지역 군사령관 및 이탈리아 사령관과 조정하여 확보한다.
4. 미국 사령관은 NATO군 지위협정 제7조 제10항a 및 b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미국 군대가 사용하는 기지 구역 및 부대 시설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한다. 미국 사령관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기 제1항에 따라 지령 발령의 책임을 가진 이탈리아의 사령관과 조정하여 미국 군대에 또는 미국군대 사이에 할당된 기지구역 및 시설에 대해 질서 및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이탈리아 현행법에 일치하는 한 취할 수 있다. 미국 사령관에게 인용되는 경찰권은 이탈리아의 주권을 해할 수 없고, 이탈리아 영역에서 경찰행동을 통괄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 이탈리아 사령관과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5. 기지 밖에서 미국 군대의 군사경찰행동은 이탈리아 당국과 합의에 따르고, 그 행동이 미국요원 간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한하며 이탈리아 당국과 연락 하에 수행한다.</td></tr>
</table>

(3) 현지조사

독일, 이탈리아의 지위협정과 미군기지의 운용상황, 실제 발생한 사례의 대응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사공실 직원 3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를 수행함.

① 일정 및 방문처

2018년(평성30년)

2월 5일(월)	람슈타인-미젠바흐 시장	
2월 6일(화)	바일러바흐(Weilerbach) 시장	독일
	라우펠트 촌장	독일
2월 7일(수)	항행연방감독기관(BAF)	독일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DFS)	독일
2월 8일(목)	레오나르도 트리카리코 전 NATO 제5전술공군사령관	이탈리아
	람베르토 디니 전 총리	이탈리아
2월 9일(금)	아비아노 부시장	이탈리아

② 면담개요(독일)

가. 람슈타인-미젠바흐 시장(랄프 헤일러씨)

※ 람슈타인-미젠바흐는 미공군 람슈타인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임. 람슈타인 기지는 주유럽미공군 사령부가 설치되어, 유럽 최대의 공수거점이 되어있음.

a. 독일 국내법의 미군의 적용

미군의 항공기에도 독일 항공법이 적용되어있음. 소음에 관해서도 독일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군도 소음기준치를 지키지 않으면 안됨. 경찰과 소방에 관한 국내법과 규칙도 미군기지에 적용되어있고, 람슈타인기지에는 독일 경찰관이 2명 상주하고 있음.

람슈타인 기지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22시부터 6시까지 비행 제한 조치는 독일 국내법이 미군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임.

b. 미군기지 내의 지자체 출입권

시장과 시청직원에게는 연간 패스가 지급되며,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지 내 출입은 가능함. 한 번에 출입 가능한 인원 수와 시간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으나, 지금까지 시의 출입이 불인정 된 경우는 없

음.

c. 소음경감위원회

람슈타인기지에는 소음경감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 위원회는 미군기지 사령관과 5개의 주변 지자체장, 독일 및 미군 소음에 관한 부서 담당자, 시민단체 대표자, 항공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 등 총 2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미군의 항공기 이착륙횟수(자료 1)와 정온시간면제 종류별 합계(자료 2) 등이 보고 되어있음.

(자료 388) 람슈타인기지 항공기 이착륙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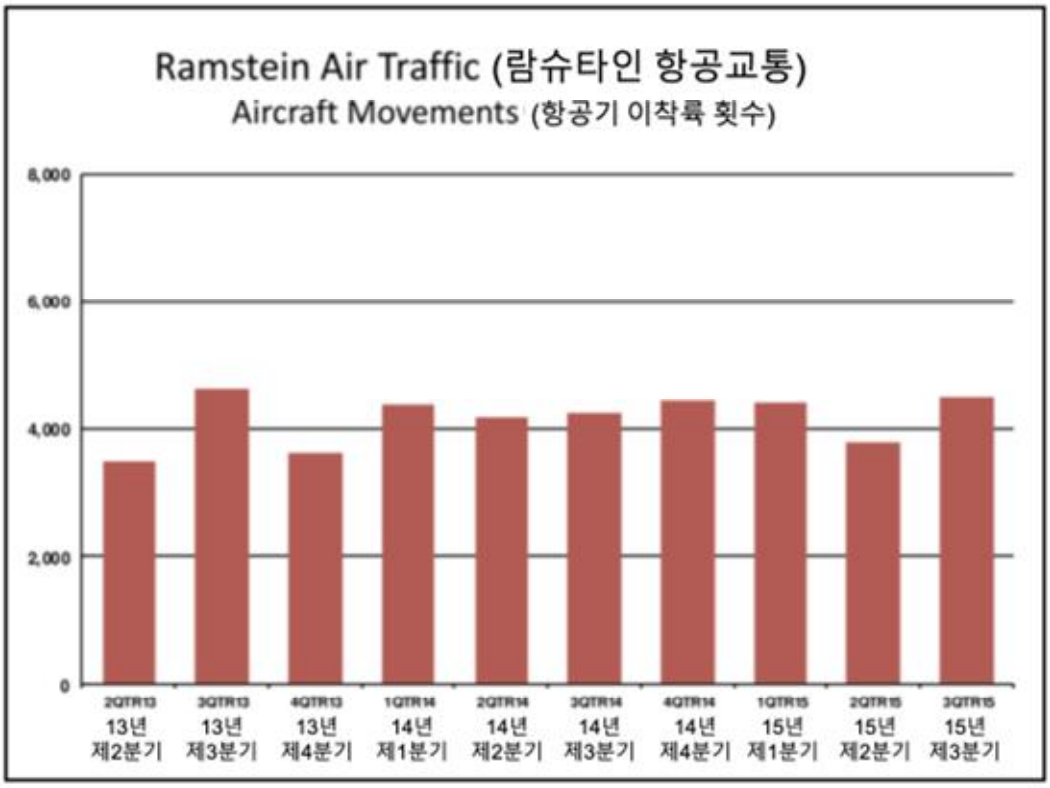

(자료 389) 정온시간면제 종류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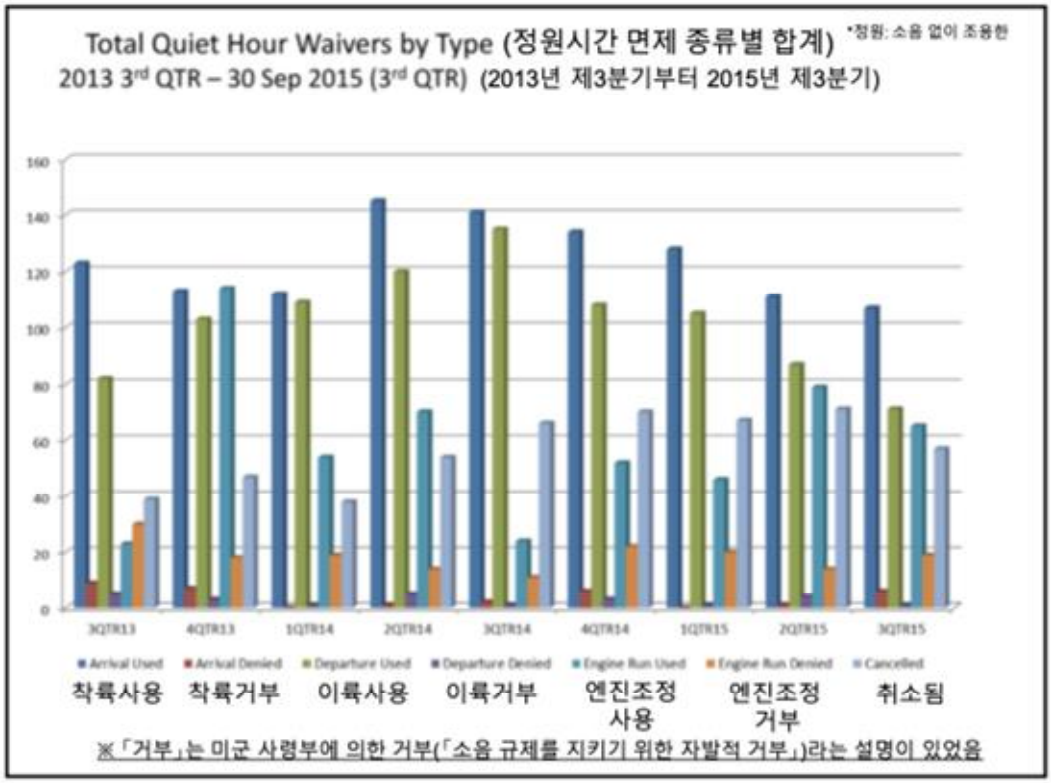

(주 1) 자료1 및 자료 2는 람슈타인-미젠바흐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오키나와현이 일본어 번역 및 주석을 추가함.

(주 2) 정온시간

- 임무 중 불가역적인 착륙・출발・엔진가동만 인정되는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22시부터 6시까지.
- 정온시간면제는 ①시체의 송환, ②의료 이송, ③날씨 변화에 의한 우회, ④비행 중 긴급사태 등에 한정되어 있음. (2014년 7월 31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지령 13-204)

나. 바일러바흐(Weilerbach) 시장(아냐 파이퍼 씨)

※ 바일러바흐는 람슈타인 기지 소재 지자체임.

a. 독일 국내법의 미군의 적용

미군에도 독일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예외는 있으나 야간 비행제한 등이 이루어짐.

b. 미군기지 내의 지자체 출입권

시장과 직원은 출입패스가 지급되며, 사전 신청 없이 기지 내에 출입이 가능. 독일에서는 환경에 관한 권한은 주(州)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출입하는 경우는 없음.

c. 소음경감위원회와 소음의 상황

소음경감위원회의 주제는 지자체 측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로 「비행횟수」「비행규칙」「제한시간 중 비행」등이 있음. 소음경감위원회와는 별도로 미군과 독일군, 주변 지자체 등이 참가하는 미팅도 있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행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훈련이 증가하는 등 더욱 소음은 경감되었음. 비행경로에 관해서도 약정이 존재함.

미군의 지금까지의 소음경감에 대한 노력에는 시장 자신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음.

다. 라우펠트 촌장(칼 요셉 융커 씨)

※ 라우펠트는 미공군 스팡델렘기지 주변 지자체로, 2011년(평성23년) 4월에 스팡델렘기지 소속 A-10 전투기가 추락한 현장이었던 지자체.

a. 미군기 추락사고 당시 상황

미군기 추락사고 당시에는 독일경찰, 독일군, 미군이 도착했지만, 독일군이 현장의 안전을 유지했음. NATO 협정※으로 형식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임. 사고현장에는 규제선이 설치되었지만, 독일 경찰 뿐 만 아니라 촌장 자신도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음.

※ NATO STANAG3531 (NATO표준화협정 제3531호)

각 NATO회원국에 대해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NATO회원국의 항공기에 의한 사고 및 그 외 NATO회원국의 영역에서 자국 항공기에 의한 사고를 조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협정.

b. 사고에 관한 조사

기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미군이 수행하였으나, 조사위원회에는 독일군이 참가하고 있음. 환경조사는 독일 법률에 따라 독일 측에서 실시했지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였음.

(자료 390) 미군기 추락사고 시 관계기관 대응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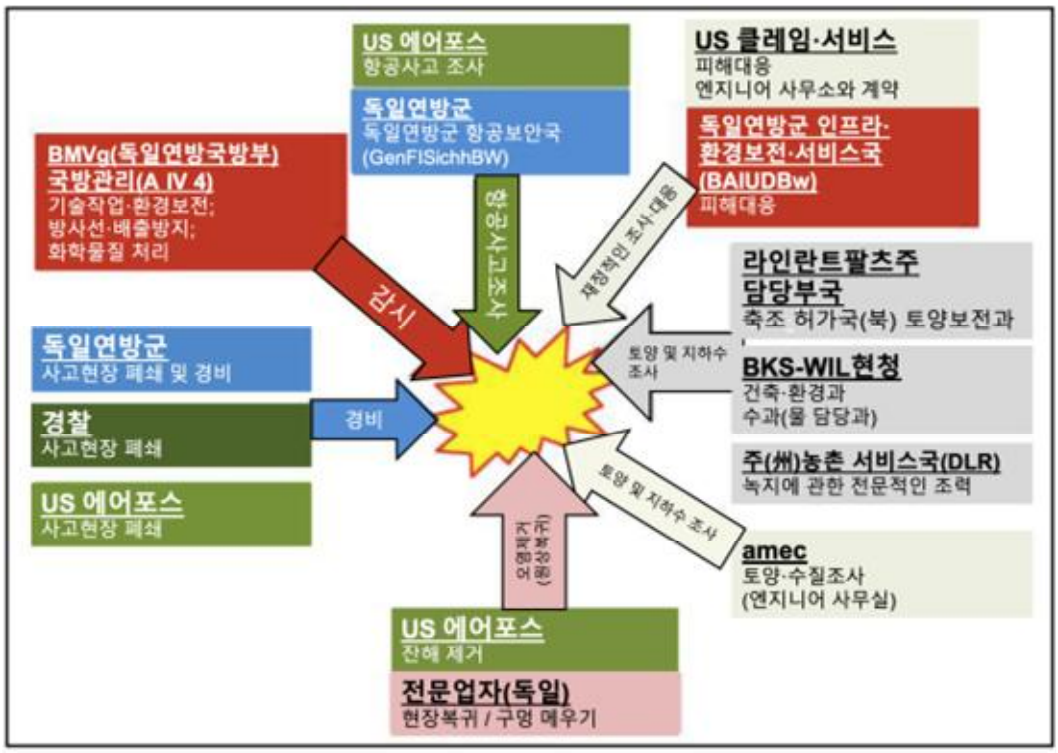

(주) 칼 요셉 융커 촌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오키나와현이 번역함.

c. 그 외

스팽델렘기지에도 소음경감위원회가 설치되어있으며, 22시 이후 비행 제한이 실시 되고 있음. 비행제한에 예외가 있으나 그 이유는 보고되고있음. 독일군에는 미군기를 포함한 소음에 관한 민원 접수 부서가 있으며,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음. 소음을 낸 항공기가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부서도 존재함. 저공비행에 관해서도 민간 항공기보다는 완화된 형태지만 규제 자체는 존재함.

라. 항행연방감독기관(BAF) (니콜라우스 헤르만 국장)

※ 항행연방감독기관은, 2009년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 항공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a. 독일 국내법의 미군의 적용

독일 항공법이 미군(NATO군)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항공법을 준수해야함. 독일군과 미군(NATO군)은 같은 법률 틀

안에서 다루어짐. 제30조가 군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으나, 예외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스크램블이나 테러대응, 훈련 등이 예외에 해당됨. 군이 어떻게 비행하는지, 어떤 속도로 비행하는지 독일군이 미군(NATO군)의 비행을 포함하여 책임을 짐. 미군(NATO군)도 독일군이 작성한 규칙(MIL AIP※ Germany)를 따를 의무가 있음

※ AIP(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경로 잡지로 국가가 발행하는 출판물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구적 정보를 수록함 (국토교통성(일본) 「용어해설페이지」(http://www.mlit.go.jp/yougo/e-a.html)에서 인용)

b. 독일 항공관제에 대해

1993년 민간기와 군용기의 항공관제의 통합을 실시함. 군용공항의 이착륙에 관해서는 각 군이 통제하지만, 그 이외에는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DFS)가 관제함.

c. 군용기 훈련(연습)에 의한 공역 이용

군이 훈련을 수행할 경우 민간기와의 조정을 통해 공역의 예약이 진행됨. 그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공역의 이용이 진행됨. 군이 예약하여 사용 가능한 공역은 저고도, 고고도로 나뉘어져있음. 실탄연습이 가능한 공역도 설정되어 있음. 공역 예약에 대해서는 독일군이 작성한 규칙(MIL AIP Germany)에 따라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DFS)에서 신청이 이루어짐.

군에 이한 공역이용은 감소경향이 있으며, 1987년에는 10.5%였던 군용기 이용이 2016년에는 1.41%정도임. (자료 4)

(자료 391) 비행행동 추이(전체 및 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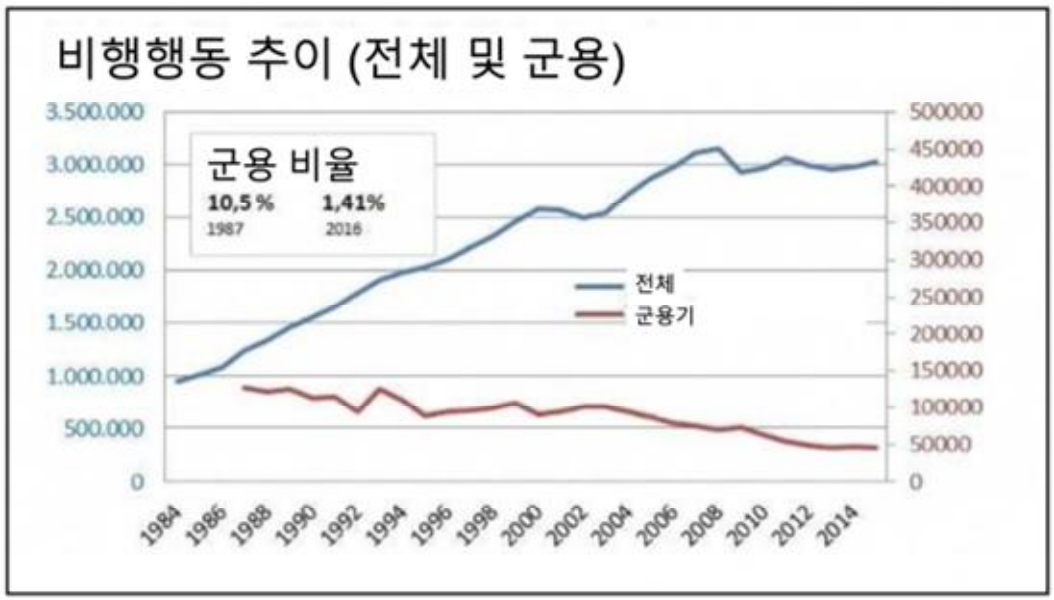

(주) 항행연방감독기관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오키나와현이 번역함.

d. 저공비행에 관하여

저공비행에 관해서는 독일군의 규칙(MIL AIP Germany)에 상세하게 규정 되어있고, 미군(NATO군)도 따라야함.. 원안이 되는 규정은 독일 항공법 제30조임.

(자료 392) 전투기의 저공비행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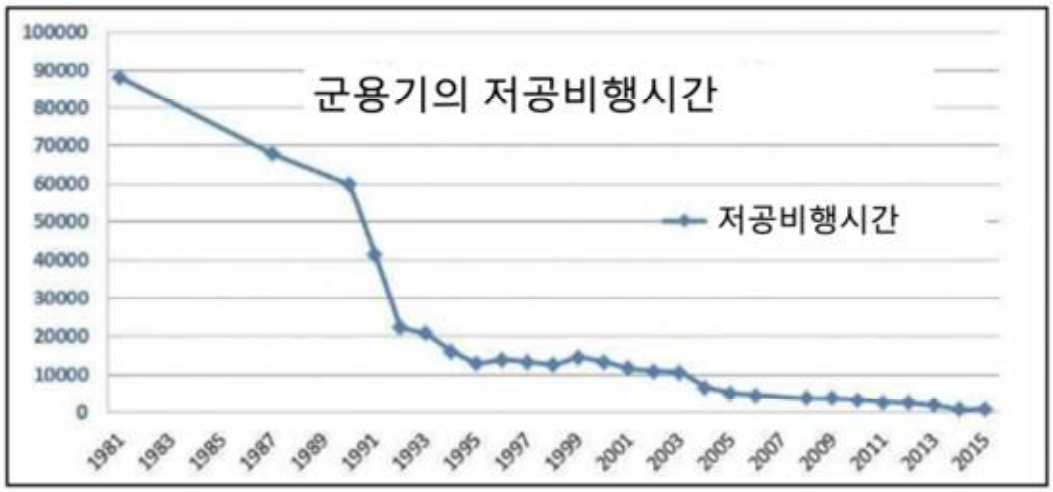

(주) 항행연방감독기관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오키나와현이 번역함.

e. 타국 군이 관리하는 공역(예: 요코타RAPCON[4])에 관하여

(요코타RAPCON에 관한 오키나와현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런 형태의 공역은 독일에 존재하지 않음.

마.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DFS) (안전・안보・군사부문관리자 오스만 Safouan 씨)

※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DFS)는 1991년 민간기와 군용기의 항공관제 통합이 합의 되었을 때 항공관제부문을 민영화하여 설립된 국가 100% 출자 법인임.

a. 독일 국내법의 미군의 적용

여기는 독일이므로 독일 법률에 관할권이 있음. 미군은 독일 항공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며, 미군기도 독일 항공법 규정에 따라 독일 항공관제(DFS)가 관제 하고 있음. 군용공항은 미군이 관리하며, 이착륙도 미군이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를 봤을 때 적은 비율임.

미군에 의한 훈련은 독일군이 작성한 규칙(핸드북)을 따르는 형태로 진행됨. 미군이 장거리 훈련이나 야간 훈련 등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희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독일의 규칙에 따라 훈련하는 것이 조건임. 조건을 지킬 수 있다면 해도 된다는 것이 입장임.

미군기 사고 당시에도 NATO STANAG3531에 기반하여 독일이 조사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는 미군이 조사하는 것을 독일이 허가하여 독일측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음.

b. 항공관제 통합

독일 항공관제에 관한 민간기와 군용기의 통합은 1959년부터 추진했지만 잘 되지 않고, 1973년까지 각각 진행해 왔음. 1973년부터는 같은 시설에서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의 담당자가 공동으로 항공관제를 실시

---

4) 요코타RAPCON(Radar Approach Control의 약자): 요코타 공역(横田空域)을 일컫는 말로, 공역은 미공군의 통제 하에 있으며, 민간 항공기도 해당 공역을 비행할 경우 미공군에 의해 항공관제관의 지시를 따라야하나, 주일미군과 사전협의하여 비행 계획 경로를 설정·조정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도쿄국제공항과 근방의 나리타국제공항을 오가는 민간항공기는 해당 공역을 피하는 루트로 비행하고 있음. 미군에 의해 일부 공역이 반환되며 민간항공기의 불편이 저감되고, 경로 단축으로 인한 연료비용 저감 및 민간항공기 이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발생함. 그러나 요코타 비행장 남쪽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증가하였고, 도쿄국제공항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을 피하기 위해 긴거리를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https://ja.wikipedia.org/wiki/%E6%A8%AA%E7%94%B0%E9%A3%9B%E8%A1%8C%E5%A0%B4 재인용

하게 되었음. 1983년에는 유연한 공역이용을 시험해보았으나 실패하였고, 1991년에 겨우 민간과 군사 항공관제의 통합이 합의되었음.

항공관제의 통합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까지 가서 협상을 진행하였음.

(자료 393) 독일의 항공관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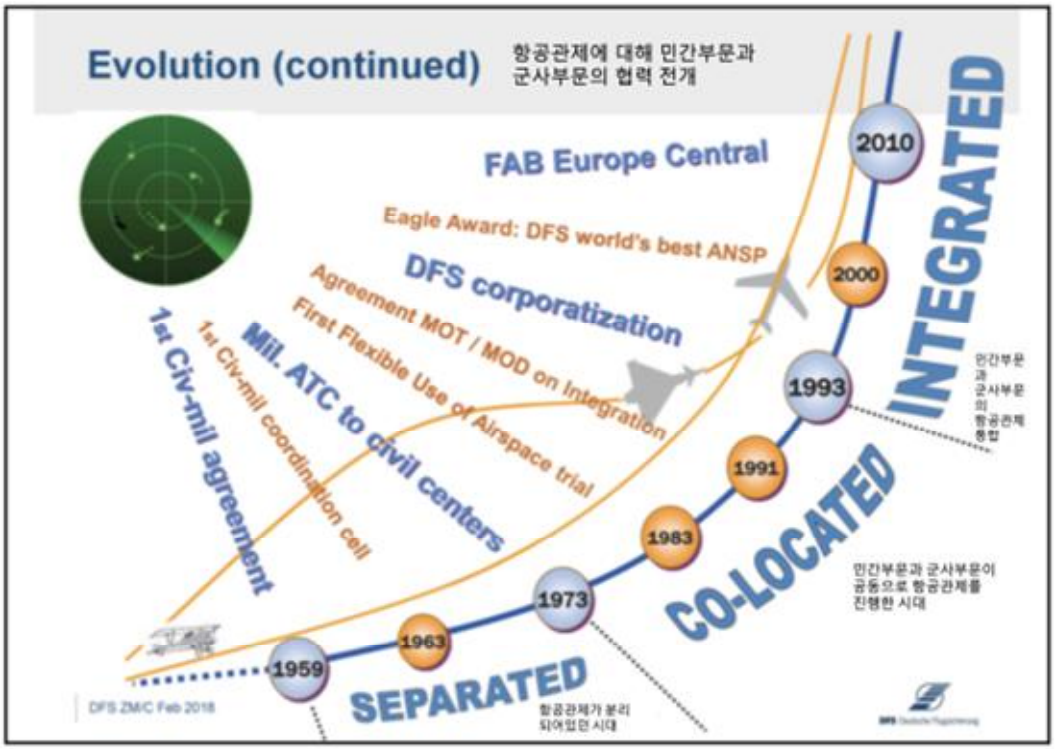

(주)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오키나와현이 번역함.

c. 군용기의 훈련(연습)에 의한 공역 예약

공역의 예약은 독일군, 미군도 방법은 동일함. 전날 까지 예약을 해야하며, 군이 공역을 예약한 경우 그 시간대는 민간기의 공역 진입이 제한됨.

공역 이용허가는 독일 항공교통관제공사(DFS)가 통보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항공기를 1순위로 검토 진행함. 규칙 범위 내라면 불가라는 형태가 아닌 시간을 이동하는 등 대안을 제안하여 타협점을 찾고 있음.

유럽의 하늘은 매우 복잡하여 미군이 하고 싶은 대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독일에서는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하고 있는 훈련 상

황은 없음.

③ 면담개요(이탈리아)

가. 레오나르도 트리카리코 전 NATO 제5전술공군사령관

※ 트리카리코씨는 1998년 발생한 미군기에 의한 로프웨이 절단사고로 설치된, 이탈리아에서의 미군기 훈련비행에 관한 미국-이탈리아 위원회의 이탈리아 측 대표자를 지낸 인물로, 위원회의 「트리카리코-프루어 보고」로 인해 이탈리아에서의 미군기 비행은 대폭 규제 받게 되었음.

a. 이탈리아 국내법의 미군의 적용

미군의 활동에는 이탈리아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모두 적용함. 이탈리아는 미군을 감시해야함. 국외 사람이 국가에 들어오려면 그 국가 법률을 따라야함. 그것을 합의라고 함. 그것이 개인이거나 국가이거나 합의가 없으면 법률은 무질서해짐. 이후 혹시 미군이 테러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때는 또 새로운 협정이 필요함.

b. 기지 관리권에 대해

이탈리아의 미군기지에는 반드시 이탈리아 군사령관이 있음. 미국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탈리아 군사령관에게 설명 해야함.

c. 로프웨이 절단 사고 후 규제 강화에 대해

미군 훈련에 대한 이탈리아군 사령관 허가제도는 1995년 양해각서(모델실무약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사고 이후 트리카리코-프루어보고에 의해 허가제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되었고, 저공비행 고도제한과 시간제한 등이 강화 되었음.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세르비아가 공습작전 중이기도 했지만, 사고를 일으킨 미군이 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0명을 사망시킨 결과와 판결의 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미디어도 이상하다고 말했음.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강화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음.

나. 람베르토 디니 전 총리

※ 람베르토 디니씨는 1998년 미군기에 의한 로프웨이 절단사고 당시 외무장관으로 사고 대응을 담당한 인물임.

a. 기지의 관리권에 대해

이탈리아의 미군기지에는 이탈리아 군 사령관이 있어 미군은 모든 활동에 대해 이탈리아 군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함. 이곳은 이탈리아임. 코소보로 출동하는 것도 이탈리아의 허가가 필요함.

b. 일본과 오키나와와 미군의 관계에 대해

오키나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일본 정치가들이 움직여서 조약을 쟁취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움. 전쟁이 끝나고 몇 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필요 없지 않을까.

미군기지가 있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기에 국제적인 재검토를 진행하지 않으면 미일관계가 기이한 관계가 되어버림. 미국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친구인 일본 뿐 임. 세계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겨야 함.

다. 아비아노 부시장(다닐로 시그노레티 씨)

※ 아비아노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미공군 아비아노기지 소재 지자체임. 아비아노기지는 알프스 이남을 담당지역으로 하는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기지임.

a. 이탈리아 국내법의 미군의 적용

미군에도 환경에 관한 이탈리아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과 소음은 잘 처리되고 있음. 50년 정도 NATO군의 기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음. 이전 환경사고에는 이탈리아 조사기관과 군이 함께 조사를 시행함.

b. 기지의 관리권에 대해

기지에 있는 이탈리아 사령관이 베어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시민의 민원과 의견을 잘 대응해주고 있음. 지자체의 요청에 대해 미국 군사령관도 전향적인 대응을 해주고 있음.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요청은 대부분 들어주는 상황. 아마 이탈리아군 사령관이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 같음.

c. 소음 상황에 대해

예전에는 밤에도 빈번히 비행했지만, 현재는 횟수도 줄어 들었음. 전쟁 등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행하지 않음. 야간 제한시간대에 비행하

는 경우 시(市)에 사전 연락이 옴. 야간이나 낮잠시간의 비행제한은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님. 이전 비행 코스의 변경을 의뢰했을 때 변경해주었음.

d. 지역위원회(CoMiPar) 에 대해

아비아노기지는 주(州) 수준에서의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의 의견을 주(州)까지 올려서 대응 할 수 있음. 부정기적이지만 1년에 3회 개최하고 있음.

※ 지역위원회(CoMiPar)

1995년 미국-이탈리아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별첨「모델실무약정」제19조에는 양국 간에 지역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것을 임무로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지금까지 조사에서 아비아노기지가 있는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주 외 사르데냐주, 베네토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되었음.

3. 조사결과(요약)

(1) 독일, 이탈리아에서의 지위협정 개정과 새로운 협정체결 경위

독일에서는 1988년 발생한 주둔군의 항공기에 의한 잦은 사고로 인해 독일보충협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거세진 것을 배경으로 독일 측이 기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음. 또한 개정협상을 원한 독일 대표단에는 연방정부 뿐 아니라 각 주 대표가 참가하였음.

이탈리아에서는 1995년 양해각서(모델실무약정)을 체결한 3년 후인 1998년 발생한 미군기에 의한 로프웨이 절단사고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모델실무약정에서 규정한 미군기 훈련에 대한 허가제도와 비행규제 등 대폭 강화하였음.

양 국 모두 사고를 계기로 국민여론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그것을 실현하였음.

(2) 독일의 지위협정 등 상황

항공법과 소음에 관한 법률, 독일군 규칙 등을 원칙적으로 미군에도 적용시킴으로써 야간 비행 등 미군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

미군 비행도 독일 항공관제가 원칙으로 제어하며, 공역에서의 훈련은 독일항공관제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주변 지자체장이나 직원에게 출입증이 교부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출입이 가능. 또한 독일 미군기지 내에는 독일 경찰관 2명이 상주하고 있음. 각 기지에는 소음경감위원회가 설치되어 주변 지자체의 의견 등을 미군이 청취하여 전향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항공기사고의 대응에 대해서도 NATO표준화협정(NATO STANAG3531)에 의해 자국영역 내에서 다른 NATO회원국의 항공기사고의 조사권한이 인정되며, 독일 측이 주체적으로 조사 등을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3) 이탈리아의 지위협정 등 상황

이탈리아 미군기지는 모두 이탈리아 군사령관 하에 설치되어있으며 미군의 훈련 등 활동 시 사전에 이탈리아 군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함. 또한 미군기지의 항공관제는 이탈리아군이 시행함.

1998년 발생한 미해병대에 의한 로프웨이 절단 사고로 훈련 허가제도, 비행고도, 비행시간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됨.

각 기지에는 주(州)수준의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지자체의 요청은

위원회 등을 통해 이탈리아 군사령관이 대응하고 있음. 또한 비행경로의 변경 등 지자체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4) 일본의 지위협정 등 상황

일본은 「환경보충협정」이나 「군속에 관한 보충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전히 많은 기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운용개선으로 대응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1960년 미일지위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국에 대해 정식으로 한 번도 개정을 제기한 적 없음.

국내법 적용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반 국제법 상 주둔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입국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미일지위협정은 미군의 국내법 적용이 명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음.

미군기 비행에 관해서는 항공기 운행에 대해 정하고 있는 항공법 제6장 등 규정이 항공법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일부를 제외하고 적용제외되고 있음. 또한 일본정부는 미군기 비행에 대해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일 양 정부가 합의한 야간・이른 아침 비행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지역위원회 설치도 지금까지 지자체가 설치를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음.

항공기 사고 등의 대응에 있어서도 미일합동위원회의 시설・구역 내의 모든 사람 혹은 재산, 시설・구역 외 미군 재산에 대해 일본 당국은 수색, 압류 또는 검증을 진행할 권한을 행사 하지 않도록 합의되었으며, 사고현장의 통제도 일본 측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님.

(5) 총괄

독일, 이탈리아 모두 미군기 사고를 계기로 국민여론이 거세진 것을 배경으로 지위협정의 개정과 새로운 협정 체결에 임하고, 이를 실현하였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국 법률과 규칙을 미군에도 적용시켜 자국의 주권을 확립하고, 미군의 활동을 제어하고 있음.

또한 소음경감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의견 등을 미군이 청취하고 있음.

이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일이 합의한 비행제한 등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과 지자체가 지역위원회 설치를 요구해도 대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양국과는 큰 차이가 있음.

4. 타국 지위협정 조사에 대한 이후 과제와 대응

(1) 이후 과제

2017년(평성29년)에 진행한 타국 지위협정 조사를 통해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① 독일, 이탈리아에서 미군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법령의 번역・분석

2017년(평성29년) 조사에서 양국에서 미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법률과 규칙 등에 대해 어떠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각 법령에 대한 원문의 수집, 통역 및 분석 작업이 계속 할 필요가 있음.

② 이번 대상이 아니었던 사항에 관한 조사

2017년(평성29년) 조사에서는 미군에 대한 수입국 국내법의 적용, 기지의 관리권, 훈련・연습에 대한 수입국의 관여, 항공기 사고의 대응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나, 미일지위협정은 이외에도 제1조 군속의 범위 문제, 제17조 형사재판권 문제, 제18조 민사청구권 문제, 제25조 미일합동위원회, 그리고 환경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타국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규정되고, 운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 할 필요 있음.

③ 독일, 이탈리아 이외의 국가의 상황

독일, 이탈리아 이외의 타국에서 지위협정이 어떻게 규정되고, 운용되고 있는지 조사 필요성을 할 필요 있음.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국가와 지위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사대상국은 조건을 정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④ 국민적인 의론 환기

미일지위협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와 이 협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국민 전체에 알리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대처

① 타국 지위협정 조사 전개

「(1) 이후 과제」를 시급하게 검토하여 올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층 조사를 전개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함.

② 지위협정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오키나와현이 조사하여 수집한 타국 지위협정과 법령, 그 일본어 번역 등의 정보를 「지위협정 포털 사이트」로서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공개하여 국내외 연구자 등이 미일지위협정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③ 알기 쉬운 형태의 정보 발신

미일지위협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와 협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국민 전체에 펼쳐 나가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명확해진 사항에 대해 일반국민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여, 팜플렛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국내외에 널리 정보 발신함.

오키나와현

〒900-8570　오키나와현 나하시 이즈미자키1-2-2

지사공실기지대책과

전화: 098-866-2460(직통)

HP: http://www.pref.okinawa.jp/site/chijiko/kichitai/

해외 미군기지를 탐사하다

펴낸 곳 :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발간: 2018년 12월 19일
문의: 신수연 02-747-8500